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41-14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2023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2023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I 부정청탁의 금지

1. 규정 내용	10
2. 관련 판례	13

부정청탁 성립	지위·권한 남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09 결정	13
	법령위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과1303 결정	15
		청주지방법원 2018과157 결정	16
제3호 인사 등	채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과53398 결정	17
		인천지방법원 2021과55 결정	21
		대구지방법원 2021과443 결정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과5 결정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과1028 결정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과42 결정	25
		의정부지방법원 2017과101 결정	27
	승진심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과52023 결정	29
	계약직 직원 채용	수원지방법원 2018과52 결정	30
		전주지방법원 2020과9 결정	31
	계약직 직원 평가	전주지방법원 2020과10 결정	32
		광주지방법원 2022과2 결정	33
	공무수행사인의 인사	청주지방법원 2020과17 결정	3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과1 결정		35	

제7호 계약	당사자선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과32 결정	36
		울산지방법원 2019과87 결정	3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과2 결정	41
제8호 보조금 등	배정	전주지방법원 2021과43 결정	43
제9호 재화·용역	철도 승차권 구입 수련원 이용 공무수행사인 공급 재화·용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과26 결정	44
		청주지방법원 2018과966 결정	45
		의정부지방법원 2022과119 결정	46
제10호 학사행정	출석부 조작 입학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과19 결정	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과57471 결정	48
제13호 지도·단속	단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과4 결정	49
		인천지방법원 2021과10 결정	50
	위법사항 묵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과4 결정	52
제14호 수사·재판 ·행형	수사	전주지방법원 2021과3 결정	57

CONTENTS

II 금품등 수수의 금지

1. 규정 내용	60
2. 관련 판례	62

금품등의 범위	보험가입	의정부지방법원 2021과255 결정	62
	대출사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과101044 결정	63
	골프비용	의정부지방법원 2021과10168 결정	64
	골프비용 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1738 결정	65
	백신무료접종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과30 결정	66
	기념패	대전지방법원 2021과63 결정	67
	학술지 게재 비용	대전지방법원 2020과198 결정	68
	진료비 감액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14 결정	69
	현금	제주지방법원 2019과302 결정	70
	금융이익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과96 결정	71
	여행경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과10368 결정	72
	별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과1 결정	73
	숙박비	광주지방법원 2017과50934 결정	76
수수	공직자들의 배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과51688 결정	77
	학생 인솔 필요 비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과10135 결정	78
	정산	대구지방법원 2021과91 결정	79
		대전지방법원 2018과138 결정	80
	경조사비 대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과10293 결정	81

요구	요구	부산지방법원 2017과109 결정	83
직무관련성	일반적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과11061 결정	85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과29 결정	88
	예견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47 결정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4 결정	91
	직무 직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과34 결정	93
	과거의 직무	수원지방법원 2017과102702 결정	94
	점검대상	수원지방법원 2017과74 결정	99
	보전금 지원대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과3 결정	101
	관내 판사와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2016과76 결정	104
가액산정	가족식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과76 결정	105
	동행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과228 결정	106
	제공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52817 결정	108
	렌탈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과8 결정	112
		울산지방법원 2020과129 결정	113
	각출	울산지방법원 2020과205 결정	1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과21 결정	1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과10237 결정	121
	출장경비	광주지방법원 2019과451 결정	122
		대전지방법원 2020과197 결정	123
이자상당액	대전지방법원 2020과197 결정	123	
취업제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과1057 결정	125	

CONTENTS

II 금품등 수수의 금지

가액산정	초과 조의금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과14 결정	1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과40 결정	128
	통상의 거래가격	수원지방법원 2018과100953 결정	129
	개별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7과215 결정	134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2017과100 결정	136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낙찰예정자	의정부지방법원 2021과409 결정	137
	연속 금품 제공	춘천지방법원 2021과25 결정	1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과1630 결정	141
	실업급여 수급자 선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과10282 결정	143
	감사 기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과5 결정	144
		대구지방법원 2019과1017 결정	145
	기프트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과140 결정	148
	교수와 학생	의정부지방법원 2017과96 결정	149
행정심판 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과290 결정	151	
제6호 공식적 행사	골프대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과42 결정	154
	영화세미나	대전지방법원 2016과527 결정	157
제8호 사회상규	사회상규의 개념	춘천지방법원 2016과20 결정	163
	소액의 감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과204 결정	171
반환	반환의 의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과11896 결정	174
	지체없이	창원지방법원 2018과41 결정	1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과187 결정	178
		의정부지방법원 2016과418 결정	188

III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규정 내용	192
2. 관련 판례	193

초과사례금	미신고	인천지방법원 2021과113 결정	193
	미신고 및 미반환	청주지방법원 2018과912 결정	1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과160 결정	195
		인천지방법원 2017과101 결정	196

IV 기타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 지정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과30 결정	198
	운동부지도자	청주지방법원 2021과37 결정	199
	유치원 교사	부산지방법원 2021과68 결정	201
	시의원	의정부지방법원 2020과236 결정	203
	언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과251 결정	204
	건축 감리인	청주지방법원 2020과49 결정	206
	법원 감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과11848 결정	207
제재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과108 결정	209
	위법성 착오	광주지방법원 2020과2954 결정	210
	책임감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과10 결정	211

CONTENTS

IV 기타

과태료 부과	소속기관장이 아닌 자의 과태료 부과 통보	부산지방법원 2021과40 결정	212	
		광주지방법원 2021과6548 결정	213	
	과태료 부과 주체	춘천지방법원 2019과33 결정	214	
	징계부가금 의결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1과100 결정	220	
	형사처벌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과1949 결정	221	
		인천지방법원 2019과108결정	222	
	기소유예시 과태료 부과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과12476 결정	223	
	광주지방법원 2020과1933 결정	224		
	위반자 주소지 미기재시 처리	의정부지방법원 2022과97 결정	226	
양벌규정	적용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과55 결정	2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과14 결정	229	
	사비 지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과54258 결정	231	
		적용	부산지방법원 2021과303 결정	23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과51487 결정	23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과15 결정	236	
	면책 조건	인천지방법원 2017과5 결정	237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2023

I

부정청탁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01 규정 내용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 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논문심사·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부정청탁의 상대방(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등도 포함
- 법령을 위반하여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
 - ※ 부정청탁금지조항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열거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규정내용을 보면 단순한 법령위반행위가 부정청탁이라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헌법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법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부정청탁금지조항은 이에 더하여 조례·규칙도 법령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적 의미의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와 고시, 훈령, 지침 형식의 행정규칙도 부정청탁금지조항의 법령에 포함됨이 분명하다(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 병합)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도 법령에 해당(청주지방법원 2018. 9. 13.자 2018과165 결정 참조)
 - ※ (예시)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벌칙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02 관련 판례

부정부탁
성립

지위·권한 남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① C는 2018. 2. 19.부터 2020. 2. 3.까지 국군수송사령부 이동관리단 D에서 수송지원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철도승차권 예매지원을 담당하는 군인인 사실, ② 위반자 A는 군인으로 복무하다 2007. 4. 1. 소령으로 전역한 자로 군에서 근무할 때부터 C와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실, ③ 위반자 A는 2017. 1.경부터 2020. 1.경까지 아래 청탁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지인 또는 거래처 직원들로부터 D를 통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승차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마다 C에게 D를 통하여 철도승차권을 발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④ 한편 위반자 B는 위반자 A의 지인으로 2019. 5.경 위반자 A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반자 B는, 자신이 철도승차권이 필요한 사실을 위반자 A가 우연히 알고 이를 구해주겠다고 하였던 것이지, 자신이 먼저 A에게 D를 통하여 철도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즉 부정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란 위 법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14가지 유형의 대상직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및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바, 기록에 따르면 위반자 B는 위반자 A가 퇴역군인으로서 군을 통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철도승차권을 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반자 B가 적극적으로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반자 A로 하여금 철도승차권을 구하도록 한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반자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탁일람표

순번	청탁자	승차권 청탁 시기	승차권 대금 입금일
1	E	2017. 1.경	2017. 1. 24.
		2019. 5.경	2019. 5. 3.
2	F	2018. 9.경	2018. 9.14.
		2019. 2.경	2019. 2. 1.
		2020. 1.경	2020. 1. 15.
3	G	2018. 9.경	2018. 9. 19.
		2020. 1.경	2020. 1. 16.
4	H	2019. 1.경	2019. 1. 28.
5	I	2019. 1.경	2019. 1. 30.
6	J	2019. 1.경	2019. 1. 30.
		2019. 5.경	2019. 5. 3.
		2020. 1.경	2020. 1. 15.
7	B	2019. 5.경	2019. 5.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들은 구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 제15호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반자 A는 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반자 B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 정도,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따라서 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27.

부정청탁
성립

법령위반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사 건 2018과1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1. A
2. B

약식결정일 2019. 3. 6.

주 문 위반자들에게 각 과태료 5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은 공정한 승진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 개최 당일 위원으로 선정 되었음이 해당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고, 위원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아니하는 점, 위반자들은 2017. 12. 21. 회의가 개최되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이를 파악하였는데, 위반자들은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원들을 통하여 승진 심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위반자들은 위원들 중 단지 한두 명의 위원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위반자 A는 위원들 중 6명, 위반자 B는 위원들 중 4명을 상대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소속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의 승진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들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에게 위와 같이 소속 소방관의 승진을 부탁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에서 정한 지방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공정 의무를 위반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반자들은 공직자의 승진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5. 1.

부정청탁
성립

법령위반

청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1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① 2017. 7. 초순경 B시청 앞마당에서 인사담당관 C에게 7월 인사에서 D를 B시청 도시개발과 산단재생팀장으로, E을 B시청 도시개발과로 전입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D는 2017. 7.경 B시청 도시개발과 산단재생팀장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가 제3자인 D를 위하여 인사 청탁을 금지한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② 2017. 6. 15. 18:30경 F 소재 G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 I로부터 98,75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아 수수한 사실, 같은 날 J유흥주점, 닭갈비집, 위반자의 집 근처에서 위 I로부터 합계 4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항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300만 원, ②항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9. 13.

제3호
인사 등

채용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5339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반사항

다음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위반자는 2019. 1. 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인 B기관 (다음부터는 'B기관'이라 한다)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B기관 유망기술발굴팀 연구원 2명이 사퇴하였고, 위반자는 유망기술발굴팀이 아닌 클러스터 및 플랫폼 기획·관리분야 직원을 채용하도록 지시하였다. B기관은 2019. 3. 5. 클러스터 기획·관리분야 선임급 연구원 등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채용 절차의 주요경과는 아래와 같다(이하 '1차 채용'이라 한다).

- 1) 2019. 3.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서류전형을 통하여 C, D 외 1명이 면접대상자로 선발되었다.
- 2) B기관은 유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인사기획 분야 보직자 및 기술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약 25명의 심사위원 명단을 관리하며 그 중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선정해 왔다. 위반자는 2019. 3. 말경 채용 업무 담당자인 경영지원팀 선임연구원 E에게 심사위원 명단에 없던 자신의 지인 등 3명(F, G, H)을 면접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외부 심사위원 3명(F, G, H) 및 B기관의 내부 심사위원 2명(본부장 I, 비상임이사 J)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구성되었다.

- 3) 위반자는 2019. 4. 초순경 다른 업무 관련으로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외부 심사위원 F에게 클러스터 분야가 중요하니 좋은 사람을 뽑아달라고 강조하며 지원자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C는 K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고, D는 사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와 같이 지원자들의 경력상 특징을 설명하였다.
- 4) 면접전형이 2019. 4. 10. 실시되었고, 외부 심사위원 F, G는 심사 과정에서 '위반자가 일을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원하는 사람을 뽑아주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면접 결과는 아래표 기재와 같고 D가 최고점자로 합격자로 선발되고 C가 차점자가 되었다.

항목	내부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			평균	순위
	I	J	F	G	H		
D	88	88	80	80	87	85.0	1
C	63	62	87	85	87	78.3	2
○○○	78	81	77	65	79	78.0	3

- 5) 위반자는 2019. 4. 11. I, E에게 내부 심사위원들의 C에 대한 면접 점수를 높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I, E가 이를 거부하였다.
- 6) 위반자는 2019. 4. 11. I, E 등에게 D에 대한 수습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수습기간 중 중간평가를 도입하여 부적합으로 평가되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면직 등을 하도록 지시한 다음 I, E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기술 신규사업 기획·추진·예산 확보 및 추경사업 기획·협의·예산 확보' 등을 D의 수습기간 중 업무 목록으로 지시하였다. D 이외에 수습기간 중 중간평가를 하거나 위반자가 수습직원의 수습기간 중 업무내용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위반자는 D가 채용된 2019. 5. 10.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9. 8. 1. D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 결재요청을 '위반자가 부과한 업무를 추진하여 이룬 성과를 확인할 수 없고, 직무 적합 여부를 엄정하게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였다. L은 위반자가 부과한 추경사업 예산 확보와 같은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과 협의가 필요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수습직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7) D는 2019. 5. 10. 채용되어 수습을 시작하였다.

다. B기관 기술사업화팀 선임급 연구원이 2019. 4. 말경 퇴사하였고, 위반자는 기술사업화 분야가 아닌 클러스터 기획·관리분야 선임급 연구원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B기관은 2019. 5. 8. 클러스터 기획·관리분야 선임급 연구원 등의 채용공고를 하였고, 채용 절차의 주요경과는 아래와 같다.

(다음부터는 '2차 채용'이라 한다).

- 1) 위반자는 2차 채용 서류전형의 외부 심사위원(1명) 및 면접전형의 외부 심사위원들(4명)을 직접 지정하였다.
- 2) 위반자는 서류전형 내부 심사위원인 공공기술창업팀 팀장 M에게 '바이오·생명 쪽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획·정책 업무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C의 전공은 분자생물학이었고, 기획 및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K 근무경력이 있었다. 서류전형에서 M과 외부 심사위원은 C에게 최고점을 주었고, C 외 1명이 면접대상자로 선발되었다.
- 3) C는 K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향응 접대 및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해임된 사실이 있다. 위반자는 업무 담당자에게 면접대상자의 과거 비위 사실을 면접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못 하도록 지시하였다. 면접전형에는 C만 참석하여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 4) B기관 인사위원회가 2019. 6. 19. C의 채용을 심의하였고, 본부장 I와 당연직 위원인 경영지원팀 팀장 L이 위원들에게 C의 과거 비위행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위원 M은 비위행위가 취업제한 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C를 채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C의 비위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자문 후 차기 인사위원회에서 C의 임용 여부를 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5) K는 2019. 6. 26. B기관에 'C가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2010. 4. 27. 퇴사하였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고 회신하였고, 서초경찰서는 2019. 6. 28. B기관에 'C가 2009. 5. 27.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회신하였다.
- 6) 위반자는 2019. 7. 1. 경영지원팀 팀장 L에게 일정을 알리지 않고 위반자가 새롭게 지정한 외부 위원 5명(위반자의 지인이거나 면접 외부심사위원들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이다) 및 M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였고, C를 채용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찬성 4, 반대 2). B기관은 2019. 7. 10. C를 선임급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라. 위반자가 C를 채용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등의 선정에 관여하거나 채용 결과를 변경하려고 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반하여 외부 심사위원 등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1, 2차 채용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은 심사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이름, 나이, 출신학교 등을 알려주지 않고, 경력사항과 전공, 지원동기 등이 기재된 지원신청서를 교부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위반자는 사전에 심사위원인 F, M에게 지원자들의 이름과 특성을 알려주고 어떤 특성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기를 희망하는지 표시하여 블라인드 방식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마. 전임 원장은 I 등에 의하여 B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사실이 없고, 교수로 재직하던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원장직을 중도사임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C는 'I가 1, 2차 채용 과정에서 C를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B기관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I를 형사고발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2020. 10. 15. I에게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항고가 2021. 1. 26. 기각되었다.

2. 판단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정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7.

제3호
인사 등

채용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11. 1. B대학교 C어학원 직원 추가 채용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심사 후 자신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D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 어학원장 E에게 D를 잘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부정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5.

제3호
인사 등

채용

대구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4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위반자는 아래 기재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반사항]

상기 위반자(B대학교 비서팀장-당시 직함)는 2020년 1월 ~ 2월까지 진행된 C병원 직원 채용과정에서 D병원 E 총무팀장(당시 직함)과의 친분(대학 선후배)과 개인사정(부인 병환-C병원에서 통원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D병원 E 총무팀장의 아들(지원자 E)이 C병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C병원 F 행정부장(당시 직함)과 G C병원장(당시 직함)에게 전화를 통해 4차례(F 행정부장 3회, G 병원장 1회) 채용 부정청탁을 함.

2021. 6. 3.

제3호
인사 등

채용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0,0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2017. 10. 23. 위반자 B을 위하여 자신이 ○○부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부 C와 D에게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위반자 B는 위반자 A에게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D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 A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위반자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17.

제3호
인사 등

채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사 건 2018과10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 ○○○을 과태료 금 8,000,000원에, 위반자 ○○○를 과태료 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은 2017. 10. 17. 12:26경 본인의 아들인 위반자 ○○○로부터 2017년 제2차 해양경찰 채용시험 종합적성검사 중 OMR답안지를 잘못 입력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신저와 전화 통화를 받고 같은 날 12:14경 동 시험 감독관 업무를 수행 중이던 △△해양경찰청 △△△과 소속 경사 □□□에게 본인의 아들이 OMR답안지 마킹을 잘못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여 채용시험에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자 ○○○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친인 △△해양경찰청 과장인 위반자 ○○○에게 전화통화 등을 하여 채용시험 감독관에게 부정 청탁을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6.

제3호
인사 등

채용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나. 위반자는 B 본사 건설사업처 C부처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반자의 아들인 D가 2017년 하반기 B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전형과정에 합격하자 B 소속 면접위원들에게 청탁하여 아들의 실무면접 전형과정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8. 22:00경 본사 채용담당직원인 E에게 전화로 청탁하여 아들 D의 면접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본사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그 중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직원 6명에게 아들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면접시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다.

다. 그러나 B 감사실에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 면접위원들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면접번호 유출사실을 발견하고, 면접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면접위원들로부터 위반자의 전화 청탁에 대한 자진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이에 위반자가 아들을 2017. 12. 7.에 예정된 실무면접을 포기시킴으로써 최종합격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반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인 B의 채용담당직원 및 면접위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아들을 면접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번호를 알아 낸 후, 우호적인 평가를 부탁하였는바,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는 3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정청탁행위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위반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채용 담당자들에게 위반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공기업 부정채용은 청년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위반자에게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위반자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반자가 내부 감사를 통한 사실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아들의 면접을 포기시킴으로써 최종 합격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행위는 없었던 점, 위반자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본 건으로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점, 위반자가 ○○공사 및 B에서 약 28년 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2003년 환경부장관상, 2014년 산업부장관상 등을 받는 등 여러 수상실적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위반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8.

제3호
인사 등

채용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1. 위반자 A를,
가. 교사 C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에 처하고,
나.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2,000,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2. 위반자 B을,
가. 교사 D에 대한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나. 교사 G에 대한 2016. 12. 27.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며,
다. 교사 G에 대한 2016. 12. 30.경 청탁에 대하여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고,
라.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1.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학교법인 H 정관 제37조의10은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I고등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교원인사위원회는 해당 교과에 필기, 서류, 시강(실기), 면접 심사기준안 및 각 단계별 채점자나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되는 위반행위

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반자 A는 2016. 12. 26.경 교사 C에게, 2016. 12. 29.경 교사 D에게 각각 J가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J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교사 C는 나중에 “J가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 번복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② 위반자 B는 2016. 12. 27.경 교사 D, 교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③ 위반자 B는 2016. 12. 30.경 교사 G에게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J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교사들은 영어과 교과협의회 소속 영어 교사들이고, 위 교과협의회에서 교과별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이들은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위와 같은 부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다. 위반자들은 제3자인 J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각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반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인정되지 않는 위반행위

가. 교사 E는 위반자들이 “학벌만 강조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역차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부정청탁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반자들이 교사 E에게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교사 F는 영어 교사가 아니어서 영어과 교과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사 F에 대한 청탁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교사 E, 교사 F에 대한 각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3. 28.

제3호
인사 등

승진심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사 건 2021과520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기술평가원 인사위원회가 2020. 12. 21.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반자는 ○○○○○기술평가원 B로서 2020. 12. 18. 위 인사위원회에 승진심사 위원으로 참여할 본부장 3명에게 전화를 걸어 승진 대상자인 C를 배려해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28.

제3호
인사 등

계약직 직원 채용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5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년도 ○○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의 직업, 산불감시원의 보수,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제3호
인사 등

계약직 직원 채용

전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B군 행정복지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2019. 1.경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위원인 B군 사회복지과장 C등에게 전화를 하여 친척이니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A의 친척 조카인 D의 B군 자원봉사센터의 1년 계약직 직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제3자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7.

제3호
인사 등

계약직 직원 채용

전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군 문화체육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 1.경 B군 자원봉사 센터에서 1년 계약직 직원을 채용시 자신의 친척 조카인 C가 계약직 직원 면접에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채용 될 수 있도록 B군 행정복지국장인 D에게 부탁하였고, A가 직접 계약직 직원 채용의 면접위원 E 등에게 전화를 하여 친척이니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등으로 C의 직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조 1항 제3호,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7.

제3호
인사 등

계약직 직원 평가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2과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광주지방보훈청 소속기관인 B관리소에서 기간제근로자(환경관리원)로 근무하고 있는 C와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무성적 평가 전날에 평소 지인 관계인 B관리소장 D에게 전화를 걸어 C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8.

제3호
인사 등

계약직 직원 평가

청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시설관리공단 B로 재직할 당시인 2018. 6.경 기간제근로자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평정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4명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평가를 하고, 1명의 기간제근로자에게는 특혜적 평가를 하도록 당시 기간제근로자 근무평가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질서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위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액수를 정한다.

2021. 7. 20.

제3호
인사 등

공무수행사인의 인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결정

사 건 2019과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8. 내지 9.경 'B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C의 D상무에게 본인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2017. 10. 10.부터 2018. 4. 30.까지 7개월 간 근무하도록 한 사실, 2018. 6.경 'E건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던 공무수행사인 주식회사 F의 G단장에게 본인의 배우자를 감리단 현장 사무보조원으로 소개하여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위반자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27.

제7호
계약

당사자 선정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사 건 2021과3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위반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1. 6.~7.경 (주)강원랜드 강원랜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독립적인 카지노 영업권을 부여받은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B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호텔 기프트샵에 입점할 물품공급을 위한 'D 계약'에 대한 입찰(제한경쟁방식) 과정에서 각 계약 입찰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 회사 C팀 소속 직원을 확인한 사실, 2021. 6. 30. E 부문 평가위원인 F에게 접근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주)G를 언급하며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 2021. 7. 1. H 부문 평가위원인 I, J에게 접근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K를 언급하며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 2021. 7. 2. L 부문 평가위원인 M, N, O에게 접근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인 P 주식회사를 언급하며 잘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반자는 (주)강원랜드 D 계약 관련하여 (주)G, K, P 주식회사를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되도록 담당 평가위원들이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과태료 금액의 결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위반자는 먼저 적극적으로 평가위원 6명에게 접근하여 위 각 업체를 언급하며 청탁한 점, 위반자의 청탁이 부적절하다고 느낀 일부 평가위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가업무가 중지되어 (주)강원랜드의 공급계약에 차질을 빚게 된 점, 위반자는 청탁 말미에 다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덧붙이고,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평가위원들에게 연락하여 청탁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한편, 위반자는 위반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평가위원들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반자가 청탁 상대방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거나 이에 준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관계는 아닌 점, 위 각 업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거나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8.

제7호
계약

당사자 선정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4. D
5. E

주 문 위반자 A, B에게 각 과태료 514,000원, 위반자 C에게 과태료 1,028,000원을, 위반자 D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위반자 E에게 과태료 7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1. 위반자 A, B, C**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청 F기관 G연구실에서 H사업 등 I팀 업무 총괄을, 위반자 B는 같은 F기관 J팀에서 △△예산 사전업무 총괄을 각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인 사실, C는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기관으로부터 K 등 용역사업을 받아 수행한 업체인 L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인 사실, 위 위반자들은 2018. 8. 17.부터 8. 19.까지 ○○도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고, 그때 위반자 C가 L의 법인카드를 골프여행과 관련한 비용 2,871,000원(전체 금액 2,901,000원에서 렌트카 환급을 받은 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여행비용으로 인정하고, 위 액수에서 공제될 금액과 관련한 위 위반자들의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을 모두 결제하였고, 다만 위반자 A, B가 각 700,000원씩 1,400,000원을 모아 위반자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 A, B는 동일인인 위반자 C로부터 257,000원 $[(2,871,000\text{원} - 2,100,000\text{원}) \times 1/3]$ 에 해당하는 금품 상당액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위 위반자들은 위 골프여행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사고 및 체력단련의 목적으로 가게 된 것으로서 향응에 대한 고의나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직무 관련성이 문제되지 않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들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위반자 D, E

위반자 D, E에 대한 위반사실의 요지는, ① 위반자 D가 ○○청 F기관 소속 M실장의 지위에 있는 공직자로서, 2017. 2. 28. 위 M실에서 발주의뢰한 'N' 용역사업(이하 '위탁용역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입찰공고시 자격 요건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되자 엔지니어링 용역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인 위반자 E로부터 자격요건 완화를 부탁받은 뒤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을 완화하여 O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위반자 D가 2017. 4.경 위반자 E로부터 위탁용역사업 수주를 위하여 담당직원을 소개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P를 위반자 E를 만나게 한 뒤 '잘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① 위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M실에서 위탁용역사업의 자격요건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제한되자 무응찰로 인한 사업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을 완화하였고, 이후 O와 주식회사 Q가 응찰하자 기술평가위원회의 기술평가 수행을 거쳐 O가 계약체결을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기록상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반자 D가 위반자 E의 청탁을 받고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② 위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 D가 2017. 4.경 위반자 E의 부탁을 받고 P를 위반자 E에게 소개시키고 '잘 봐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반자 D가 이와 같이 위탁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절차가 계속되는 중에 위반자 E의 부탁을 받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입찰대상 사업자의 대표인 위반자 E에게 소개시키고 '잘 봐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위반자 D에게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5호 소정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 청탁을 하는 행위가, 위반자 E에게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가 각 성립한다.

위 위반자들은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반자 D가 위탁용역사업의 입찰대상 사업자와 실무책임자 사이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상규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위반자 A, B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자 C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위반자 D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5호, 위반자 E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15호를 적용하되 위반행위의 정도와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2021. 2. 18.

제7호
계약

당사자 선정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결정

사 건 2018과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5,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B군 의원이고,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위반자와 배우자가 자본금 총액의 90%를 소유한 사업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B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나. 위반자는 2017. 12. 초순경 B군 해양산림과 산림관리팀장 D로부터 방제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D에게 '우리 농약사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가 있는데 이번에 구매하려는 약제명과 맞는지 알아봐라'라고 말하였다.
- 다. D는 같은 날 B군 해양산림과 산림관리팀원 E에게 'A의원님이 솔껍질깍지벌레 약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 번 알아봐라'라고 하였다.
- 라. E는 B군 세무회계과 경리팀원이던 F에게 C와 계약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F는 E에게 C의 견적서를 부탁하였으며, E는 위반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계금액을 알려주면서 C의 견적서를 보내 달라고 하였고, 위반자는 E에게 견적서를 팩스로 보냈으며, E는 F에게 위 견적서를 가져다 주었다.
- 마. F는 C가 위반자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E나 B군 세무회계과 경리팀장 G에게 '의원님 것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바. 그 후 위반자는 G와 D, E를 B군청사 내 군의원실로 불렀고, 그 곳에서 G, D는 위반자에게 'C와의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 사. 위반자는 2017. 12. 11.경 군의원실로 G를 부른 뒤 G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솔경질 깍지벌레 방제약품을 가지고 있는데, B군에서 구입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G는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 아. 이후 위반자는 2017. 12. 12.경 B군청사 1층에 위치한 흡연구역에서 재차 G를 부른 뒤 G에게 ‘어떻게, 계약이 되겠는가?’라고 말하였고, G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 자. 이에 G는 2017. 12. 12.경 B군청사 1층 사무실에서 F에게 ‘그냥 계약을 해줘 버려라. 그거 1,000만 원도 안되는데 큰 문제가 있겠냐.’라고 말하며 2017년 산림병해충(솔경질깍지벌레) 방제사업 구매 계약을 C와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F는 그 지시에 따라 2017. 12. 13.경 9,996,000원 상당의 구매 계약을 C와 체결하는 공문을 결재 상신하였으며, G는 이를 결재하였다.
- 차. 위 계약으로 인하여 G, F는 공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고단71), 2020. 1. 16. 위 법원으로부터 F는 벌금 3,000,000원, G는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카. 또한 D, E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통보가 되었고(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과3), 2020. 2. 12. 위 법원으로부터 D는 과태료 8,000,000원, E는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C가 B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인 D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G에게 ‘C로부터 약품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법인이 계약당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부정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행위이다.

나아가 위반자의 신분, 행위 태양과 그 결과, 관련자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7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2.

제8호
보조금 등

배정

전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한다.) 제5조, 제23조에 따르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9.경 B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D에게 E 방진망 시공 사업을 청탁하고, B 이사 F와 함께 전주시 소재 G동 E회장, H동 E 분회장, I동 E 분회장을 차례로 만나 주민참여예산으로 E 방진망 필터 교체·시공 사업을 신청하도록 한 후, 전주시 완산구청 J팀장에게 연락하여 팩스번호를 물어봐 B 이사 F으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청 J팀으로 지역 밀착형 도민제안신청서 5부, 경적서 5부 등을 모사전송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당사자의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5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28.

제9호
재화·용역

철도 승차권 구입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사 건 2020과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1.경, 2019. 5.경, 2020. 1.경 B과 친분이 있는 C에게 TMO를 통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판매하는 철도 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각 부탁하고, C는 위반자의 부탁에 따라 철도승차권 예매지원을 담당하는 군인인 B에게 철도 승차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1.

제9호
재화·용역

수련원 이용

청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9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의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11. 22.경 ○○교육청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교육청 B수련원장에게, 2016. 11. 22.부터 같은 달 25.까지 ○○교육청 교육공무원들이 신청 및 추천을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교육청 B수련원 C분원의 객실 1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부정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제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8.

제9호 재화·용역

공무수행사인 공급 재화·용역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2과1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위반자는 B군수지원여단 복지담당관으로 군 아파트 관리실무 및 위탁운영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행정사무에 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공공기관이 공급·관리하는 용역을 특정 개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C 등 부대 간부 4명으로부터 ‘자녀들의 어린이집 입소를 빨리 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9. 12.경부터 2020. 3.경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원장인 F에게 ‘내 아이와 지인들의 자녀 입소를 빨리 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반자 및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부대 간부 4명의 자녀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대기 순번과 상관없이 우선 입소시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 정도,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8.

제10호
학사행정

출석부 조작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2.경부터 2018. 9.경까지 서울 B에 소재한 C대학교의 출석부 관리담당자 또는 조교에게 결석을 지각으로 바꾸는 등 출석부를 조작하도록 부정 청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7. 3.

제10호
학사행정

입학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5747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시 ○○구 B소재 C초등학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학칙에 근거한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부정청탁하여 정원 외 추가 입학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6.

제13호
지도·단속

단속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

사 건 2021과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1986. 9. 6.부터 2020. 12. 3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B계장으로 근무하던 2018. 6. 18. 20:10경 군산시 소재 C가 낸 유흥업소 'D' 단속과 관련하여 군산경찰서 풍속 단속 담당자인 E계장과 통화하면서 “미성년자 고용만 단속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외국인 목적외 취업활동)은 차후 단속하는 게 어떨겠냐”라고 하며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17.

제13호
지도·단속

단속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4. D

주 문

1. 위반자 A에게 과태료 3,0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2,000,000원, 위반자 C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각 부과한다.
2. 위반자 D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 A는 E경찰서 경무계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반자 B로부터 부탁을 받고 2020. 7. 28. 14:40경 풍속단속 업무 담당 경장 F에게 전화하여 “아는 지인의 게임장이 우리 경찰서 관할에 들어온다, ‘G’를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이 운영한다,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똑딱이 같이 치사한거는 단속하지 마.”라고 말함으로써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나. 위반자 B는 위반자 C로부터 아는 동생이 G를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어 혹시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0. 7. 28.경 위반자 A에게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인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다. 위반자 C는 2020. 7. 28.경 위반자 B에게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단속 안 맞게 해달라”고 말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인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

2. 따라서 위반자 A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위반자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위반자 C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5조 제1항 및 각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반자 A, B, C에게 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위반자 D에 대하여는, 위반자 C를 통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위반자의 C에 대한 진술조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4. 결국, 위반자 A, B, C에 대하여는 각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자 D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6.

제13호
지도·단속

위법사항 목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결정

사 건 2017과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2013. 7. 2.경부터 ○○으로 근무하다 2016. 12. 31. 퇴직한 자이다.

나. △△주식회사는 2016. 9. 1.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2016. 10. 17. 주식회사 □□를 소방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이를 신고를 하였다.

다. ■■본부는 2016. 5.경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였고, ☆☆소방서는 위 계획에 따라 ‘2016년 2차 소방관련업 지도·점검 운영계획’(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2016. 6.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소방공사현장 등에 대한 표본점검 등 지도·감독을 하게 되었는데, 2016. 11. 1. 감리완공신청 표본검사 결과 △△주식회사가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위반자는 2016. 11. 1. 17:30경에서 △△주식회사의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전무 이사를 만났고, 같은 날 17:40경 ☆☆에 근무하는 신고자를 불러 신고자에게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묵인지시’라 한다).

마. 위반자는 2016. 11. 2. 16:20경 ☆☆의 팀장에게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하지시’라 한다).

바. 신고자는 2016. 11. 3. ●●에게 위반자의 이 사건 묵인지시를 신고하였고 ●●는 2017. 1. 13. 이 법원에 위반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통보를 하였다.

사.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령은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2. 위반자의 주장 요지

- ① 위반자는 2016. 11. 1. 17:30경 당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여 신고자에게 이를 확인하려고 하였을 뿐이며,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식회사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 ② 위반자가 2016. 11. 2. 16:20경 팀장에게 한 이 사건 취하지시는 ▷▷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할 뿐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
-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는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같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주식회사 대하여는 현장 완공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는 현장 완공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본부가 수립한 ‘소방시설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에서 제시한 표본점검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감독대상을 임의로 확대·추가하여 실시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는 위법한 ■■의 현장 지도·감독에 의한 것이므로, 위반자는 이 사건 취하지시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게 함으로써 ■■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위법한 현장 지도·감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려고 하였을 뿐이다.
- ④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범위반이 아니다.
- ⑤ 따라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위반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거나 팀장에게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함으로써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신고자와 팀장에게 행정단속 또는 조사대상에서 △△주식회사가 배제되도록 하거나 △△주식회사의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반자의 ①, ② 주장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고자는 위반자가 이 사건 당일 신고자에게 ‘봐 줄 수 있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지?’라는 말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및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반자는 신고자를 만나기 전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를 만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충분히 인지하지 않았다면 신고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반자와 신고자, 팀장의 직급 및 관계, 위반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취하지시가 위반자의 단순한 의견개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반자의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반자의 ③, ④ 주장에 관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 위반자가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묵인지시를 하기 직전에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의 당사자인 △△주식회사의 감리업체로 지정된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를 만나고 있었던 점,
- ㉡ 위반자가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를 만나게 된 이유는 위반자의 매제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았기 때문인 점,
- ㉢ 위반자는 ■■의 공신력 유지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취하지시 당시 팀장에게 그러한 사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거나 논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㉔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위반행위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완공 검사가 아닌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서, ☆☆ 소방서가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4조의 문언상 위 조항이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되지도 않는 점,
- ㉕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31조 제1항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46조 제1항은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업체나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분명한 법적 근거가 있다할 것인 점,
- ㉖ 위와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 법적 근거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운영계획이 반드시 ■■ 본부가 수립한 ‘소방관련업체 등 지도·감독 계획’의 추진계획에서 정한 표본점검 선정 기준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선정기준 또한 지도·감독 대상에 관한 일응의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그 선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관한 일응의 가이드라인일 뿐 반드시 그 선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서 지도·감독 대상을 임의로 추가·확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 ㉗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한 현장 지도·감독은 당시 ○○으로 근무하고 있던 위반자의 결재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위반자가 위법한 이 사건 운영계획에 따른 ■■의 지도·감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반자의 허물을 덮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라 할 것인 점,
- ㉘ 이 사건 취하지시로 인하여 가장 ‘부담’이 없어지는 자는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주식회사라 할 것이므로, 위반자가 이 사건 취하지시 당시 말하였다는 ‘직원한테 부담안가고’의 ‘직원’은 △△주식회사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㉔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소방시설공사 준공필증 신청을 취하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는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묵인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③, ④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과태료 부과 범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반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위반자는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취하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는 본인이 기관장으로 있었던 이 사건 운영계획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오히려 ■■공신력을 저해하고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는 형사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던 점, 소방서장으로 근무하였던 위반자의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묵인 및 취하지시로 하여금 실제로 △△주식회사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한 처벌을 면한 것은 아닌 점(이 법원 2016고약 ○○, 위반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위반자의 지위, 이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경위와 정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25.

제14호
수사·재판
·행형

수사

전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8. 1. 23.부터 2020. 12. 31.까지 전주○○경찰서 B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8. 5. 29. 화장품 특수절도사건 피의자 C로부터 위 사건에 대해 수사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20. 5. 29.부터 같은 해 7. 6.까지 위 사건의 수사 담당 팀장(경찰공무원 D)에게 피의자 조사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통화 4회, 문자발송 2회를 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5.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2023

II

금품등 수수의 금지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01 규정 내용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서는 아니 된다.

+ 수수 금지 금품등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
-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금품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의 신고 및 반환 의무
 -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경우 소속기관장(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포함)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할 의무
 -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제재대상 제외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필요적 면제)

+ 벌칙

- 부정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 수수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의 경우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02 관련 판례

금품등의
범위

보험가입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2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8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시 시의원으로서 인조 잔디 판매 및 시공업을 하는 C에게 2020. 2. 20. 위반자 남편으로부터 월 48,364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한 사실, 또한 C로부터 2020. 4. 15. 생일 선물 명목으로 225,200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 위반 금액 2배 상당액인 800,000원(48,364×4개월분 + 225,200원, 만원 미만은 절삭.)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10.


**금품등의
범위**
대출사례금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0104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2. 19.경 대출금액의 사례비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31.


 금품등의
범위

골프비용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101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 C 통신망 구축 협력 업체인 (주)D의 직원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 통신선 공용설치 업무를 담당하는 E에게 2020년 1월부터 골프 비용 333,000원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법정 하한: 666,000원(333,000원×2), 법정 상한: 1,665,000원(=333,000원×5)] 주문과 같이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

금품등의 범위

골프비용 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17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8조 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5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과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포천시 공무원인 B에게 2019. 4. 11과 2019. 7. 21. 2회에 걸쳐 위반자가 대표자로 있는 C가 보유한 D 무기명 채권을 이용하여 175,000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할인받도록 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고, 포천시 공무원인 B, E, F이 포함된 G동호회의 회원으로 2019. 7. 5.부터 2019. 7. 6.까지 골프모임에 참석하여 위 직무관련 공무원들에게 저녁식사 비용으로 56,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합계 231,2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7.


 금품등의
범위

백신무료접종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사 건 2020과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주 문 위반자 A, B, C, D, E, F에게 각 과태료 15,200원을, 위반자 G, H, I에게 각 과태료 349,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공직자들인 위반자 A, B, C, D, E, F는 2019. 10. 10.경 위반자 G, H, I로부터 각 7,600원 상당의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고, 위반자 G, H, I는 2019. 10. 10.과 같은 달 11. 공직자들인 위반자 A, B, C, D, E, F와 공직자들인 시의원 17명 등 총 23명의 공직자에게 각 7,600원 상당의 독감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총 174,800원 상당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 A, B, C, D, E, F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반자 G, H, I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18.


**금품등의
범위**
기념패

대전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6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8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1. 2. 19. 직원인 팀장 B를 통하여 C 실태점검(전기, 기계, 통신)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인 D에게 금 24K(3.75g)(시가 242,347원)이 전면에 도장된 공로패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30.


**금품등의
범위**
학술지 게재 비용

대전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9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재단 △△△△센터 B팀장으로, 2019. 10. 16. 위 재단에 연구기자재를 납품하는 C 대표 D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연구논문의 학술지 게재비용 308,0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31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원으로 정한다.

2021. 3. 24.


**금품등의
범위**
진료비 감액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81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위반자는, 前 ○○도 B경찰서장으로 2019. 12. 31. 정년 퇴직한 자로, 직무관련자인 C 소재 D병원 총무부장이자 B경찰서 △△위원으로 활동중인 E와 친분을 맺으면서 2018. 1. 31., 같은 해 10. 23., 2019. 6. 19. 총 3회에 걸쳐서 진료비 총 273,800원의 진료비를 제공(감액) 받았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5.


 금품등의
범위

현금

▶ 제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3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위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그 심사 완료일인 2019. 5. 13. 심사 담당자로부터 담배를 얻어 피우면서 담배갑속에 몰래 100,000원을 넣어 되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반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다만 뒤늦게 이를 발견한 심사 담당자는 같은 날 전자신고와 함께 위반자에게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고, 다음날 위반자에게 이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 위반자가 심사담당자에게 청탁을 하지는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0.

금품등의 범위

금융이익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사 건 2019과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8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 기록에 의하면, ①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 주식회사 B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인 사실,
 ② 위반자는 2018. 1. 30.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C소속 직원인 D로부터 55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8. 23. 100,000원, 2019. 10. 11. 45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③ 위반자는 2017. 8. 25.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E소속 직원인 F로부터 1,80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10. 11. 1,80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④ 위반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G소속 직원인 H로부터 2016. 5. 11. 1,250,000원, 2018. 12. 19. 50,000원, 2019. 3. 20. 2,100,000원을 각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4. 22. 1,650,000원, 2019. 10. 11. 750,000원을 변제한 사실,
 ⑤ 위반자는 2018. 9. 7.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인 I소속 직원인 J로부터 2018. 9. 7. 20,000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2019. 10. 11.경 위 금액을 변제한 사실,
 ⑥ 이로써 위반자는 합계 약 29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 31.


**금품등의
범위**
여행경비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103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7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주식회사 B(B,이사) 소속으로, 주식회사 C(C, 대표 D) 과장 E, 소장 F, 부장 G와 함께,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공단 소속 공직자 등인 H(위반행위 당시 I팀 대리), J(I팀 차장), K(L부서 처장)의 미국 출장에 동행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호텔 숙박비, 차량 렌트비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9.

금품등의 범위

벌초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결정

사 건 2018과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시청 ○○○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1. 1.부터 2018. 1. 7.까지 ○○○시 ○○○의 직책을 담당하였다.

나. 위반자는 ○○○으로 근무하던 중, 2017. 8.경 □□□을 운영하는 □□□를 소개받아 □□□에게 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 정비 용역을 맡기게 되었고, □□□는 2017. 9. 12.부터 2017. 9. 15.까지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7. 9. 15.경 □□□에게 ○○도 ●●군 ●●●에 위치한 위반자 종중의 묘를 벌초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7. 9. 16. 인부 2명(▷▷▷, ▷▷▷)으로 하여금 약 3시간 가량 위 종중의 묘를 벌초하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위반자는 ○○○시 예산편성 지침상 예초인부임 기준액 75,000원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예초인부임 기준에 맞추어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용역기간을 2017. 9. 11.부터 2017. 9. 20.까지로 기재하여 인부임 지급결의 문서를 기안하였는데, □□□와 위반자는 이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위반자가 2017. 9. 16. 인부 2명으로 하여금 종중의 묘를 벌초하게 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서장은 2018. 3. 14.경 이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시에 위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시장은 ○○경찰서로부터 위반자의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사실을 통보받고 2018. 3. 28.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을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시 ○○○으로 근무하며 위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정비 용역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가 관리하는 인부 2명이 약 3시간 가량 위반자 종중의 묘를 무상으로 별초함으로써 위반자에게 인부 2명분의 1/2일 인부임인 15만 원(= 1/2일 인부임 75,000원×2인)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바, 위반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에게 종중 묘의 별초를 요청하면서 인부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바쁜 업무와 병원치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깨닫고 바로 지급하였으므로, 위반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으려는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반자는 □□□에게 1일간 종중 묘를 별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통상적으로 예초작업과 같은 용역의 경우 인부의 노임 지급은 용역이 종료됨과 동시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위반자는 2017. 9. 16. 인부 2명이 종중의 묘를 별초하는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별초가 끝날 때까지 이를 관리·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해야 할 노임을 준비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시설·△△관광단지 등 주변 환경정비 용역과 관련된 용역 대금이 모두 지급 될 때까지도 위 별초와 관련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4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위 위반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인부임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의 직무관련성의 내용의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변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할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것으로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위반자가 받은 금품등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반자가 위반사실이 밝혀진 이후 인부 2인에게 인부임 상당액인 75,000원씩을 각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수령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3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4. 25.


 금품등의
범위

숙박비

▶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509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위반자는 2017. 4. 5. 수학여행위탁여행사에 ○○도 수학여행(2017. 4. 25. ~ 4. 28. 예정)의 사전답사 일정(2017. 4. 6. ~ 4. 8.)을 전달하였고, 그해 4. 6. 수학여행시 숙박 예정인 ○○도에 있는 C에서 객실(1일 숙박비용 150,000원)을 제공받아 숙박을 한 다음, 다음날인 4. 7. 퇴실하면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교원인 위반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50,000원 상당의 숙박 등 편의를 제공받았고, 위와 같은 편의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발견 되지 않는다.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 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7.

수수

공직자등의 배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사 건 2021과5168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1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교직원 친목회의 임원으로서 다른 임원들인 B 등 5명과 함께 2018. 5. 8.부터 2020. 4. 28.까지 합계 320만 원을 공직자 등의 배우자인 C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3.

수수

학생 인솔 필요 비용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결정

사 건 2021과101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사회체육과 조교로서 2016. 12. 21.부터 2016. 12. 24까지 교외 교육(스키)를 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합계 147,000원 상당의 버스(왕복), 숙박,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비용은 B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외교육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B 대학교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것인바, 위반자가 위 상당액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3

수수

정산

대구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9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21. 5. 20.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271,58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위반사실 기재와 같이 위반자는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활성화를 위한 국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청송군 소속 공무원 C, D, E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공무원들에게 준 금품이 향후 정산을 예정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B는 견학을 마치고도 한참이 지난 후인 2019. 9. 6. 위 3인의 공무원들로부터 각 603,640원씩의 항공료와 숙박비만을 정산 받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그 정산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나중에 위 견학시 B가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비용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가 개시된 이후인 2021. 7. 2.과 2021. 7. 4.에서야 위 공무원들이 각 378,600원씩 B에 반환하게 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 제공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결과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15.

수수

정산

대전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13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92,400원씩 각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부 C부서 ○○○, 위반자 B는 ○○부 소관 공공기관인 △△공사 D부서 직원인 사실, B가 2018. 4. 10. A이 포함된 9명의 저녁식사 후 B의 소속기관인 △△공사 법인카드로 식사비 416,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416,000원을 개인별 식사비로 나누면 약 46,2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며, A와 B의 각 소속기관 및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위 개인별 식사비는 공직자인 A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A에 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B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위 개인별 식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반자들은 위 개인별 식사비를 나중에 정산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식사 전·중이나 직후가 아니라 ○○부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이후에 비로소 제기된 주장일 뿐인 점, A는 위 조사 당시 B의 법인카드 사용 여부 및 결제금액조차 몰랐다고 진술한 바, A에게 과연 위 개인별 식사비를 정산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스러운 점, B 역시 위 식사비 전체를 추후에 개인별로 정산할 수 없는 법인카드로 결제하였고, 그에 대한 감사 개시 이후에야 비로소 개인카드로 결제 수단을 변경한 점(즉 B 역시 A에게 개인별 식사비를 따로 추심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반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 2. 14.

수수

경조사비 대납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1029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등이 인정된다.

가. ○○○공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그 소속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제1호 나목에 의거 ‘공직자등’에 해당 한다.

나. 위반자는 ○○○공사 ○○○본부 B부 차장으로, C는 위반자의 상급자로 같은 부 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6. 10. 4. 위 C로부터 C의 지인인 D에 대한 경조사비 50,000원을 C 명의로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위반자의 비용으로 대신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3회, 합계 650,000원의 경조사비를 대신 송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C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다항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경위, 위반자의 위반 회수, 제공한 경제적 이익, 위반자가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본 건으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던 점, 위반자가 ○○○공사에서 약 28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1996. 4.경 E 등 여러 차례 공로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1,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2.

요구

요구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1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4. D
5. E

주 문 위반자 A를 과태료 금 350,000원에, 위반자 B를 과태료 금 1,060,000원에, 위반자 C를 과태료 금 150,000원에, 위반자 D를 과태료 금 310,000원에, 위반자 E를 과태료 금 310,000원에 각 처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 A는 F고등학교 축구부 부감독, 위반자 B는 위 축구부 감독, 위반자 C는 위 축구부 코치, 위반자 D는 위 축구부 학부모회 회장, 위반자 E는 위 축구부 학부모회 총무로서, 아래 ① 내지 ⑤항 기재와 같이 위반자 A, B, C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반자 D, E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위반자 A는 2016. 11.경 장모상을 당하여 ○○○의료원에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2016. 11. 25. 위반자 D, E가 'F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이름으로 보낸 화환 1개 88,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 ② 위반자 B는 2016. 11. 25. 위반자 E에게 위반자 A의 장모 장례식장에 화환 4개, 다른 지인의 장례식장에 화환 2개 등 화환 6개 합계 513,000원 상당의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 ③ 위반자 C는 2017. 1. 31. △△△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반자 D, E가 'F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회' 이름으로 보낸 출산 축하 꽃병 1개 67,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 ④ 위반자 D, E는 위반자 A에게 위 ①항 기재와 같이 화환 1개, 위반자 C에게 위 ③항 기재와 같이 꽃병 1개 합계 155,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반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각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은 위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위반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위반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심문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 고려하여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2.

직무
관련성

일반적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사 건 2019과1106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시

약식결정일 2020. 3. 6.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 소속 과장으로서 2017년경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근무한 사실, 위반자는 근무 당시 호치민 롯데마트에서 근무하는 ○○○ 과장 으로부터 2017년 추석 및 2018년 설에 각 롯데마트 10만 원권 상품권 1장(합계 20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의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346 판결 등) 위 법리의 취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위반자의 주장

- 1) 자산이 당시 롯데마트에 대한 인허가 또는 보조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로부터 수수한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금품은 호치민에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후배와 명절에 관행적으로 주고받은 '선물'일 뿐이므로, 공직자 등이 사고 등의 목적으로 수수한 선물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 판단

1) 직무관련성 관련

가) 위반자는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할 당시 호치민 총영사관 상무영사(베트남 주○○)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과 베트남 사이의 교역 및 투자관계 확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자가 베트남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 기업들에 대하여 가지는 유형·무형의 영향력이라든지, 위반자가 ○○부 소속 과장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직무 또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의 범위 등을 고려한다면 위반자와 ○○○ 과장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위반자는 ○○○ 과장이 친하게 지내는 후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4년경 호치민에 부임하면서 ○○○ 과장을 처음 만나 친분을 쌓게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쌍방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였다거나 위반자가 ○○○ 과장에게 이 사건 금품에 대한 답례로 선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 여부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르면 사교 목적 등으로 수수할 수 있는 ‘선물’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반자에게 사교 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임이 명백한 이 사건 금품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없다.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위반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로 유가증권을 수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과태료의 결정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과태료를 정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8.

직무
관련성

밀접하게 연결된 업무

▶ 춘천시방법원 원주지원 결정

사 건 2021과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3,5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 A는 C경찰서 교통단속 및 교통안전시설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관리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위반자 B는 D시 관내 교통안전시설(교통신호제어기)의 유지·보수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위반자들은 2021. 7. 28. 09:51경 D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반자 B는 'F 소재 G 식당에 100만 원을 미리 결제하여 놓았으니 가서 식사하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식대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위반자 A는 '나중에 뭐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 먹고 체하는 건 아니지? 고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위 식대를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

다. 강원도경찰청장은 위반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 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한 후 위반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탁 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21. 11. 16.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와 금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반자 A는 C경찰서의 교통관리계장으로서 신호등제어기의 설치 위치의 지정이나 신호등제어기의 조작, 신호등 고장시 수리를 위한 교통통제 등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업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담당하는 소관청이 C경찰서가 아닌 D시청이고, 경찰공무원이 그 계약의 체결이나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통신호제어기 관리업체에 대한 위 위반자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5항을 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과태료 금액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위반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식대 제공을 약속하게 된 경위와 약속한 금액, 약속 이후 실제로 위반자 A가 G 식당에서 직원 4명과 함께 303,5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후 위반자 B에게 연락하였고, 위반자 B는 다음 날 실제로 100만 원을 위 식당에 지급한 점, 이후 위반자 A는 위 식당을 찾아가 식대 303,500원을 다시 결제한 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위반자들의 입장 내지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2021. 12. 24.

직무
관련성

예견되는 경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사 건 2019과4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20. 4. 2.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소속 학생(석사 재학 중)으로 2019. 5. 13.경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지도교수 ○○○에게 금품(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반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무용학과 교수 ○○○이 운영하는 ○○○○○○는 위 학과의 재학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점, 이 사건 당일은 ○○○ 교수에 대한 스승의 날 행사였던 점, 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 사건 당일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 21명 중 위반자를 비롯한 12명이 ○○○이 지도교수거나 지도를 받을 예정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8.

직무
관련성

예견되는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75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소명된다.

- 가. 위반자는 B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미술사학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한국근현대사 등을 강의하고 관련 논문을 지도·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나. B대학교 총장은 2018. 1. 18. 이 법원에, 위반자의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석·박사 과정을 졸업하거나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 중 43명은 위반자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각 1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각출하여, 2017. 5. 14. 서울 종로구 소재 한식집 C에서 위반자를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위반자는 위 기념행사에서 위 학생들로부터 스카프 선물, 케이크, 식사를 제공받았는데, 위 학생들 중 7명은 위반자로부터 석·박사 학위 논문지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에 있는 자들(이하 '이 사건 학생들'이라한다)로서 이들을 기여한 부분은 스카프 선물 356,865원과 식사 등 음식물 16,105원 합계 372,970원 상당이다. 이로써 위반자는 직무관련자인 이 사건 학생들로부터 372,970원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2.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교직원 역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위 법에서 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미술대학원 부교수로서 2017. 5. 14. 본인의 환갑 및 스승의 날 기념행사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이 사건 학생들로부터 356,865원 상당의 선물과 16,105원 상당의 음식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이 사건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심사한 적이 없으며 지도·심사할 예정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학생들은 모두 B대학교 미술대학원 미술사학과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로서 위 대학원 부교수인 위반자로부터 지도·평가를 받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고, 위반자로부터 논문 지도·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위반자의 환갑 및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선물과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지 위반자가 이를 요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위반자는 학생들이 각출한 돈을 돌려준 점, 기타 위반자가 제공받은 금품의 종류와 가액,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가액(372,970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75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2. 10.

직무
관련성

직무 직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

사 건 2019과3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9. 5. 16. 통영시 소재 국민연금공단 ○○지사 민원실에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반환일시금 반환 신, 예상연금액 등에 관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금지급부 사무직 5급 B에게 상담을 받은 후, 10만 원이 봉투를 건네주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3. 12.

직무
관련성

과거의 직무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1027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위반자는 ○○도 B군에 본점을 두고 교통영향평가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D는 ○○도 B군 공무원으로서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건설교통과(도로교통 부문) 등에 근무하면서 관내 각종 공사계약·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한바 있다.
- 나. 위반자는 2016. 11. 12. 위 D를 비롯하여 E, F와 함께 골프를 쳤다(이하 ‘이 사건 골프 모임’이라 한다). 위반자는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하였다.
- 다. 특히 주식회사 C는 2016. 8. 24.부터 2016. 9. 13.까지 사이에 ‘G’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때 D가 B군 건설교통과 소속으로서 위 용역업무의 감독을 직접 담당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위반자의 주장 요지

- ① 금품제공자로 특정된 G(부사장 H), N(대표 O) 등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공사의 하청 업체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반자와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위반자는 처음부터 H, O에게 접대를 받고자 후배들과의 자리를 주선한 것이 아니었고, 위반자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후배들 역시 OO국토관리청 소속 7, 8급 공무원들로서 위반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 ③ H, L로부터 수수한 식사비용은 30,000원 이하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이라 할 것이다.
- ④ 위반자의 일행이 O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407,000원이 아닌 175,000원이고, 그 중 O가 위반자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은 25,000원(= 175,000원 / 7명)이다.

4. 판단**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는 ○○도 B군 일대에서 교통영향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D는 ○○도 B군에서 그 관할의 도로교통 관련 용역 계약의 체결과 그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으며, 더욱이 D는 주식회사 C가 수행한 용역계약 관련 업무를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약 2달 전까지 담당할 바 있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 250,000원을 부담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금품 등으로 정해진 골프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나.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① 직무관련성이 없다. 주식회사 C가 수행한 용역은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하는 용역으로써 발주처의 이권개입이 있을 수 없고 수행금액도 비교적 소액(1,100만 원 상당)으로 D에 대하여 청탁할 이유가 없었다.
- ② 지역 내 토목관련 종사자들 사이의 친목도모 목적에 불과하였다(이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 ③ 위반자가 D의 그린피 25만 원을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D가 동반자들의 캐디피 12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하였다.

2)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설령 위반자의 주장과 같이 위반자와 D사이에 당시 이권관계가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반자와 D사이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친목 도모 목적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상규’란 형법 제20조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와 통일되게 해석할 수 있는데[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정에는 신증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018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대가성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적[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참조]에 비추어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 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에는 신증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D 몫의 골프비용을 부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위반자는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고 D는 당시 건설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의 체결 및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부터 불과 2달 전까지 직접 위반자 수행 용역을 감독하기도 하였으므로 직무관련성이 높다. 따라서 위반자가 D에게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② 이 사건 골프모임으로 D는 감봉 1월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50만 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골프모임의 동반자로서 그 외에도 B군 도시건축과 소속 E과 ○○○공사 H로 있던 F가 있었는데, F는 이 사건 골프모임건으로 2017. 6. 해임되었고, E 역시 타 건축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

③ 접대한 골프비용 250,000원은, 그 가액 자체로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 범위(음식물 3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 5만 원)를 넘어서므로,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추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금품제공 금액에 관한 판단

D가 2017. 2. 2. △△부 감사실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위반자가 자신의 골프비용 25만 원(그린피 20만 원, 카트로 2만 원, 캐디피 3만 원의 합계, 이는 해당 골프장에 공지된 그린피, 카트로, 캐디피의 비회원 주말가격과 일치한다)을 부담하였고 자신은 돈을 낸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 이에 B군수로부터 위반자가 25만 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과태료부과 통보의뢰가 있었고 D도 수수 금품등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실, 위반자는 D가 캐디피 12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가 D에게 위 25만 원의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과태료 금액에 관한 판단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가 비교적 직무관련성이 높은 공직자에게 골프접대를 한 것이기는 하나, 한편 D가 위반자와 관련하여 실제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D에 대하여 받은 금품등 가액 25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8.

직무
관련성

점검대상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 가. B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부의 출연 및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다.
- 나. 위반자는 위 재단의 C부 팀장으로서, 2017. 8. 8. 지역취업지원사업 현장점검 차 사업 수행기관인 D센터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 다.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던 E 상담사는 간담회 직후 식당에서 판매 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부세 5마리를 구입하여 위반자에게 전달하였다.

2. 위반자의 주장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그 결과가 인사나 사업평가에 반영될 여지가 없고, 전문 상담사 인사평가는 기획관리부에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E에게 현금으로 3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법의 직무관련 여부는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바, 사업점검자인 위반자가 점검의 대상이 되는 상담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반자가 E에게 3만 원을 주었는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23..

직무
관련성

보전금 지원대상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결정

사 건 2018과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8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사에서 여객운수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아 왔다.
- 나. 위반자는 2018. 9. 4. ~ 5.경 ○○시의회의원 12명에게 각 6년근 난발백삼 세트(약 5만 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 다. ○○시의회의원 12명은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시의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였다.
- 라. ○○시의회의장은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자의 위 금품 제공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8. 3. 11.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1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또는 제23조 제5항 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위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판단**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시로부터 매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적자 노선 보전금 등을 지원받는 지위에 있었고, 위반자는 ○○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시의회의원들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8조 제3항 제2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제8호)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금품이 비록 추석을 앞두고 제공된 약 5만 원 상당의 식품이기는 하나, 위반자는 ○○시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금품은 ○○시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제공된 점, 이 사건 금품은 ○○시의회의가 2018. 8. 23.경 이루어진 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 3억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한 이후로서 장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는 합계 약 60만 원 상당(기록상 이 사건 금품의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첨부된 언론사의 기사 상으로 확인되는 가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5만 원을 이 사건 금품의 가액으로 인정한다)의 6년근 난발백삼 12세트를 직무관련성이 있는 ○○시의회의원들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금품의 경우 환가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시의회의원들이 이 사건 금품을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금품이 ○○시의회의원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3배에 상응하는 1,8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직무
관련성

관내 판사와 변호사

전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12,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지방법원 ○○○지원 관내 변호사로서 2016. 10. 30. 15:52경 ○○시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지원 소속 D 판사가 가족(남편, 자녀 1명)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합계액 3만 원 중 2만 8천 원을 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함으로써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5.

가액산정

가족식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B 소속 직원이다. 위반자는 2018~2019년 미국 워싱턴에 있는 C의 관리 운영 실무 및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반자와 위반자 배우자를 포함한 위반자 가족은 2019. 8. 19.경 위 C의 시설공사를 수차례 진행한 현지 공사업체 대표와 식사를 한 후 공사업체 대표가 해당 식사비(약 100달러 상당)를 지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반자와 위반자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현지 공사업체로서 약 100달러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2호, 제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31.

가액산정

동행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

사 건 2019과2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2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위반자의 금품 제공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가 산재예방 감독을 담당하는 공사현장의 안전팀장으로서 위 B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인 사실, 2019. 3. 8. B의 주선으로 B 및 안전용품업체 개업을 준비 중인 C와 함께 식사를 하고 위반자가 209,000원을 결제한 사실, B와 C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위반자의 차량을 타고 귀가한 사실, 그로부터 며칠 후 B가 위반자에게 C가 현장에 찾아갈 것이니 잘 대해주라고 말했고 위반자는 현장을 방문한 C로부터 명함을 받아 이를 D협의회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배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반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해 위반자는, 2019. 3. 8. D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안전용품 판매사업을 운영하는 C를 소개받았을 뿐, E 안전팀장의 지위에서 B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며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는 고용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아무래도 노동부 감독관이 있다 보니 자신이 계산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부정한 청탁 내지 대가성이 없더라도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D협의체 회장의 지위에서 C를 소개받는 자리였다면 C가 식사대금을 결제했을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공한 금품의 액수

위반자는 2019. 7.경 이루어진 고용노동부 감사관실 조사에서 209,000원은 식사비용과 대리운전기사 비용이 합산된 금액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2019. 9. 11.자 의견서에서는 위 금액 중 122,000원은 기존의 외상값을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살피건대, 식당 주인이 위반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위반자는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에도 3인의 식대로 5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식당 주인은 평택까지의 대리기사 비용은 보통 25,000원이고 두 군데 정도 경유하더라도 4~5만 원일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진술에도 불구하고 2019. 3. 8. 당시의 식사대금과 대리운전 기사 비용은 87,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는 같은 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은 58,000원(= 87,000원 × 2/3, B 및 B가 임의로 동행한 C에게 제공된 금액)이므로, 과태료 금액을 12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19.

가액산정

제공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528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20만 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2,500,000원을 각각 부과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들의 지위

- 1) (주)C(이하 'C'라 한다)는 토목, 건축계획 조사, 토목측량 및 설계시공 감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D(이하 'D'라 한다)은 건설부문의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에 대한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위반자 A는 C의 부사장으로 상하수도1부에서 상하수도 설계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위반자 B는 D의 전무로 상하수도부에서 상하수도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충주시와 C, D 사이의 용역계약

충주시는 2018년, 2019년 C, D와 다음과 같이 각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들은 그 계약 이후 각 용역사업을 진행하였다.

용역명	계약일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원)	감독공무원
E	2018.09.05.	C D	1,500,000,000	F
G	2019.03.15.	D	190,890,000	H
I	2019.09.26	D	17,670,000	F
J	2019.10.16.	C D	3,060,000,000	H

다. C, D 임직원의 충주시 공무원에 대한 향응제공

- 1) C 부사장 위반자 A와 D의 이사 K는 2019. 3. 14. 충주시 L 소재 'M' 일식당에서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N부서 공무원 O 등 11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충주시 P 소재 'Q' 주점에서 위 N부서 공무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그 비용 합계 125만 원을 위반자 A가 75만 원, K가 50만 원씩 각 분담하여 지출하였다(이하 '1차 향응제공'이라 한다).
- 2) D의 전무 위반자 B와 이사 K는 2019. 6. 3 원주시 R 소재 'S'식당에서 충주시 N부서 공무원 H, F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원주시 T에 있는 'U'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으며, 그 비용으로 위반자 B가 364,000원, K가 900,000원을 각각 지출하였다(이하 '2차 향응제공'이라 한다).
- 3) D의 전무 위반자 B 및 이사 K, C 상무 V 등은 2019. 10. 18.부터 같은 달 19일까지(1박 2일)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N부서 공무원 W, H, F 등 7명과 함께 충남 태안군에서 낚시관광 여행을 하였고, 그에 소요된 식사비, 숙박비, 낚시비용 등 합계 2,242,000원(공무원들 부담 350,000원 제외)을 V가 900,000원, 위반자 B, K가 1,342,000원을 각 분담하여 지출하였다(이하 '3차 향응제공'이라 한다).
- 4) 위와 같은 향응제공으로써 위반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금품 등 이익 금액은 다음과 같이 위반자 A는 553,571원¹⁾이고, 위반자 B는 합계 1,220,605원이다.

1) 위반자 A는 아래 표 연번 1 위반자 부담금액을 직접 결제한 것이 아니라 직원 Y가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설명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그 금액을 C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는바, 이는 위반자 A가 결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업체 결제금액 (원)	결제금액 중 위반자들 부담금액(원)		공무원에 대한 제공이익(원) (계산식 ²⁾)	공무원에 대한 제공이익 중 위반자별 제공이익(원) (계산식 ³⁾)
			공무원	업체 ⁴⁾		A	B		
1	19.3.14.	M	11명	3명 (C2, D1)	750,000	450,000		589,285 (750,000/14×11)	353,571(A) (589,285×450,000/750,000)
		Q	6명	(C2, D1)	500,000	300,000		333,333 (500,000/9×6)	200,000(A) (333,333×30만/500,000)
2	19.6.3.	S	2명	2명 (D)	364,000		364,000	182,000 (364,000/4×2)	182,000(B) (182,000×364,000/364,000)
		U	2명	2명 (D)	900,000		900,000	450,000 (900,000/4×2)	450,000(B) (450,000×900,000/900,000)
3	19.10.18.	X	7명	6명 (C2, D4)	2,592,000		1,459,000	1,045,692 (2,592,000/13×7 -350,000)	588,605(B) (1,045,692×1,459,000/2,592,000)
합계									위반자 A : 553,571 위반자 B : 1,220,605

2.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위반자 A는 553,571원 상당의 금품 등을, 위반자 B는 1,220,605원 상당의 금품 등을 각각 제공함으로써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21. 12. 7. 법률 제18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위반자들은 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위반자들이 제공한 금품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들의 향응 제공은 대상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체결 내지 이행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반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1, 2, 3차 각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은 모두 C, D와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그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인 N부서 소속이고, 특히 세 차례의 향응을 모두 제공받은 F와 H는 각 수도정비계약과 정수장설계계약을 주무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2) 계산식 업체 결제금액/참석인원 총원 × 공무원 인원 - 공무원 부담금액(연번 3의 경우)

3) 계산식 공무원제공이익 × 위반자 부담금액/ 업체 결제금액

4) 업체 C, D를 말한다.

- ② 위 각 향응을 제공한 위반자들과 K 등은 C, D에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임원들이다,
- ③ 위 공무원들과 위반자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등의 업무로 인하여 알게 된 관계일 뿐 사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④ C, D의 임직원들은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공동수급자로서 1, 3차 향응제공의 비용을 분담하였고, 심지어 1차 향응제공 당시에는 C, D가 수도정비계약의 수급비율(60%, 40%)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였다.
- ⑤ 1, 2차 향응제공이 이루어진 시기는 수도정비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의 이행기간 중이었고, 3차 향응제공이 이루어진 시기는 위 설계용역 이행기간 중이자 정수장설계계약의 체결 직후였다.
- ⑥ 위반자들은 2020. 1. 30. 및 2020. 1. 22. 각각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각 향응제공은 현재 진행 중인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 다. 따라서 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이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C, D가 각각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17.

가액산정

렌탈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사 건 2021과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사단법인 B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부 C팀장 D에게 2020. 4.경부터 2020. 10. 중순경까지 무상으로 노트북 PC 2대를 대여하고[서피스 프로6/KJU-00010(구입가액 1,298,000원), 48,900원(렌탈비 추정가액)×2대×6개월 = 586,800원], 2020. 7. 3.부터 같은 달 31.까지 협의회 등 학교공간업무 회의목적으로 총 4회, 합계 233,100원 상당의 음식 및 다과 등 구입비용을 전문지원기관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카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28.

가액산정

각출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위 반 자**
1. A
 2. B
 3. C
 4. D
 5. E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3,500,000원을, 위반자 C, D, E에게 과태료 각 7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울산 동구 F G초등학교 여자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같은 학교 배드민턴부 지도자로 근무한 교사 H에게, 학부모들이 각출하여 모금한 돈을 2018. 2. 13.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8. 5. 14. 스승의 날 떡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2018. 9. 21. 추석 명절 떡값 명목으로 60만 원을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자 B는 2020. 1.경 위 H이 운행하는 차량 렌트비 1,546,215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직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반자 C는 위 여자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으로 2020. 1. 23. H에게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만 원을, 위반자 D, E은 2020. 1.경 학부모 모임 총무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H를 위한 주유비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H에게 321,38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되, 위반자 A에 대하여는 위반자 A가 제공한 금액이 위반자 A를 포함한 13명 내지 14명의 학부모가 위 돈을 각출한 것으로 위반자 A가 제공한 금액은 약 88,462원(=50만 원×1/13+10만 원×1/14+60만 원×1/14)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20만 원을 과태료 액수로 정하고, 위반자 B에 대하여는 위반자 B가 제공한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350만 원을 과태료 액수로 정하며, 위반자 C, D, E에 대하여는 위 위반자들은 같은 기간, 같은 학부모회의 구성원으로 위 위반자들이 제공한 합계 421,380원을 위 위반들을 포함한 20명의 학부모들이 각출하여 제공한 것으로, 각 위반자가 제공한 금액은 약 21,069원(=421,380원×1/20)으로 인정되므로, 위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각 7만 원을 과태료 액수로 정하기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8. 25.

가액산정

각출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2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4,0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8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B는 ○○시 △△군 C소재 D중학교 배드민턴부 학부모회 총무로서 같은 학교 배드민턴부 지도자로 근무한 교사 위반자 A에게, 2018. 11. 24., 2018. 12. 10., 2019. 1. 16., 2019. 2. 12. 및 2019. 3. 29. 5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이 각출하여 모금한 돈을 각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제공하고, E는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위반자 A에게 2018. 10. 10. 및 2018. 11. 10. 2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이 각출하여 모금한 돈을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위반자 A는 위 돈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위반자 A는 자신이 위반자 B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한 적이 없고, B의 허위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학부모회 장부상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위반자 A에게 지급된 기록이 나타나는 점, 위반자 B가 감사당시 위반자 A에게 야간지도비 내지 급여보조비 성격을 가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학부모회에서 위반자 A 개인에게 매월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제공하였고 실제로 위반자 A가 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위반자 A는 E로부터 받은 돈 200만 원이 선수들의 식대와 용품비(라켓)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학부모회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위반자 A에게 지급된 점, 위반자 A가 제출한 식대와 용품비(라켓) 사용 내역 역시 위 '보조금'의 성격이 A 개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 및 사용된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 학부모회에서 위반자 A 개인에게 제공한 돈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되, 위반자 A에 대하여는 위반자 A가 받은 돈 700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400만 원을, 위반자 B에 대하여는 위반자 B가 제공한 금액이 위반자 B를 포함한 5명 내지 6명의 학부모가 위 돈을 각출한 것으로서 별표 기재와 같이 866,666원(=4,000,000원×1/6+1,000,000원×1/5, 원 미만 버림) 상당액이므로 위반자가 실제 A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지출한 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180만 원을 과태료의 액수로 정하기로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2. 5.

가액산정

각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결정

사 건 2017과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주 문 1. 위반자 A, B를 각 과태료 600,000원에 처한다.
2. 위반자 C은 이장협의회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 ○○○시 C읍 이장협의회(이하 ‘이장협의회’라고만 한다)는 ○○○시 C읍의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반자 B은 이장협의회의 회장이다.

나. 위반자 A은 2016. 1. 2.부터 ○○○ C읍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 1.자로 △△△ D으로 발령받게 되었다. 이에 2016. 12. 30. 저녁 무렵 ○○○시 C읍에 위치한 식당에서 위반자 A를 비롯한 전출 직원 송별행사가 개최되었다.

다. 위 자리에서 위반자 B은 위반자 이장협의회 명의로 위반자 A에게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별금 유사의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라. 이로써 위반자 A은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위반자 B은 공직자인 위반자에게 A에게 돈을 제공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2. 위반자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직무관련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1) 읍장은 시장이나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 제119조).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위반자 A가 읍장으로 있는 C읍의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단체로,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이장협의회 회칙 제4조, 제5조 등 참조).
- 2) 위와 같은 위반자 A과 위반자 이장협의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의 수수가 위반자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들은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 위반자 A는 위 300,000원을 이장협의회회의 인원수(71명)로 나누어 1인당 4,225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상호 합의 하에 돈을 모아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또한 위반자 A는 이장협의회 임원들의 수에 상응하는 식비 및 노래방비를 위 300,000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반자 B는 300,000원을 현금으로 위반자 A 개인에게 지급한 것 일 뿐 식사비 및 노래방비를 계산한 것이 아니다(한편 해당 식사비는 위반자 A가 개인적으로 지출 한 것이 아니라 C읍의 직원 격려 급식비, 송년행사 급식비 예산에서 이미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는 ①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②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2)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가 이장협의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위 ①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반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금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므로 위 ②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반자 A의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 1)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제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2) 그러나 이장협의회를 위 송별행사의 주최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자 B는 위반자 A 개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일 뿐 참석자들에게 금품등을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앞서 본 것과 같이 식사비는 C읍의 예산에 의하여 이미 결제된 상태였다).

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 해당 주장에 대한 판단

-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수수는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2) 전출 직원에 대한 전별금 교부는 과거에 적지 않게 이루어져 왔던 점, 이 사건의 경우 공개된 자리에서 돈이 교부되었고, 위반자 A가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돈의 수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부패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대가성 없거나 부정한 청탁이 없는 금품 수수행위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② 읍장과 읍내 마을 이장협의회는 직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수수된 돈의 액수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돈의 수수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우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 A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과태료의 산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돈의 수수 경위, 돈의 액수 및 소비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 A, B를 각 과태료 600,000원에 처하고, 위반자 이장협의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단체의 규모, 영리성이 중하지 아니하고, 이장협회의 회장인 B를 과태료에 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3.

가액산정

출장경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사 건 2019과102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시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위반행위 당시 토양정화팀 대리), ○○○(토양정화팀 차장), ○○○(토양지하수처 처장) 등 3인이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위터(대표 ○○○) 소속 이사 ○○○ 등 4인과 동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호텔 숙박비 5,353,162원, 차량 렌트비 2,204,440원 등 합계 7,557,602원이 지출되었는데 위 ○○○, ○○○, ○○○ 등 3인은 위 합계액 중 3,238,972원(= 7,557,602원 × 3/7, 원 미만 버림)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1,019,507원(미화 878달러)만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554,866원[=2,219,465원(=3,238,972원 - 1,019,507원) × 1/4,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반금액, 위반 경위 등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주문과 같이 과태료 금액을 정함이 상당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11.

가액산정

출장경비

▶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4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A, B, C는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D 과장 E, 소장 F, 부장 G 및 주식회사 H 이사 I와 동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호텔 숙박비 5,353,162원, 차량 렌트비 2,204,440원 합계 7,557,602원이 지출된 사실, 그런데 공단 소속 A, B, C 3인은 위 비용 중 3/7에 해당하는 3,238,972원(=7,557,602원×3/7)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19,507원(미화 878달러)만을 위 업체에 지급하여 그 차액인 2,219,465원(=3,238,972원-1,019,507원)을 부당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739,821원(=2,219,465원×1/3)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12.

가액산정

이자상당액

대전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식회사

대 리 인 변호사 안기환, 유영선, 김삼범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위반자 B 주식회사에 과태료 8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위반자 A는 시공사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공직자등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인 직무관련자 C에게 2017. 9. 20. 18,000,000원, 2017. 9. 21. 9,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위 각 대여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135,616원,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음)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위반자 B 주식회사는 그 소속 직원인 위반자 A이 위와 같이 이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고, 그 소속 직원인 D가 위 C에게 2017. 9. 22. 4,50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대여금의 이자 상당의 이익(123,904원, 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음)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의 경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과태료 액수를 정하기로 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3.

별 지

이자 계산⁵⁾

대여자	대여금(원)	대여일	변제기한	일수	이율	이자(원) ⁶⁾
A	18,000,000	2017. 9. 20.	2017. 10. 27.	37일	연 5%	91,233
	9,000,000	2017. 9. 21.	2017. 10. 27	36일	연 5%	44,384
	소계					
D	4,500,000	2017. 9. 22.	2018. 4. 11	201일	연 5%	123,904
합계						259,521

5) 이자 계산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266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건에서 2021. 4. 29. 선고한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였다.

6) = 차용금액 × 0.05 × 기간/36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

가액산정

취업제공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사 건 2020과105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4,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위반자 A가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반사실

위반자는 목포시 B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D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양 오염행위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하여 초동조치 및 단속업무를 하는 기관은 목포해양경찰서이며 차 상위 기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고 E 및 F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15.부터 2017. 8. 13.까지 E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 1) 2017. 1. 24. 목포 H에서 16,600원의 식사 접대를,
- 2) 2017. 7. 1. 목포 I에서 1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하고,
(홀인원 기념 트로피 제작비용 39만원 중에서 13만원 부담)
- 3) 2017. 7. 31. 목포 J에서 60,000원 식사 접대를,
- 4) 2018. 1. 8. 목포 K식당에서 40,500원 식사 접대를.

5) 2017. 5. 19. 자신의 회사에 G의 아들 L의 취업기회를 제공 하였다.

※ 연도별 취업제공 가액

(2017년도 : 2,519,228원, 2018년도 : 2,286,667원, 2019년도 : 2,755,635원)

또한, 2017. 9.18.부터 2019. 1. 3.까지 F로 근무하고 있는 M에게,

6) 2017. 10. 12. 목포시 N소재 J식당에서 121,250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하고,

7) 2018. 1. 8. 목포시 O소재 K식당에서 40,500원 상당 식사 접대를 하였다.

2020. 5. 11.

가액산정

초과 조의금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결정

사 건 2020과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5. 24. 김천시 B장(代) C의 장녀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호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25.

가액산정

초과 조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20. 7. 24.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 주식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B주식회사 플랜트2실에서 계약 역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18. 7. 13. ○○○ 주식회사 소속의 C에게 그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부의금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가 C에게 부의금 20만 원을 제공한 행위는 위 규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50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금액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수수금지 금품을 되돌려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4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3. 17.

가액산정

통상의 거래가격

수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1009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8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소명된다.

가. 위반자는 2017. 9. 9. 당시 ○○○부 소속 공무원이다.

나. ○○○부장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위반사유로 위반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위반자로 통보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다.

(1) 골프 향응 수수

(가) 위반자는 2017. 9. 9. ○○시 B 소재 C에서 ○○○부 직원 D 및 E 주식회사 사장 F 등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골프운동을 하였고, 위 F가 위 6인의 골프비용(비회원가 기준 총 1,307,600원)을 부담함으로써, 위반자는 217,93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위반자는 2017.9.10. 전향과 같이 C에서 ○○○부 직원 D, G 및 전향의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골프운동을 하였고, 위 F가 역시 위 7인의 골프비용(비회원가 기준 총 1,574,000원)을 부담함으로써, 위반자는 224,85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음식물 향응 수수

위반자는 2017. 9. 9. 19:30경 전향의 골프운동을 마친 후 ○○시 H 소재 I횃집에서 D 및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주식회사 J 이사 K가 위 6인의 식사비용으로 1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반자는 25,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숙박 향응 수수

위반자는 2017. 9. 9. 저녁식사 후 22:30경 L리조트 골프텔에 ○○○부 직원 D, G 및 건설업체 관련자 4명과 함께 숙박하였고, F가 위 7인의 숙박비용(비회원가 기준 총 1,100,000원)을 부담함으로써, 위반자 157,14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항공권 수수

위반자는 위 F로부터 2017. 9. 9. 08:00 김포 → 제주 항공권 및 2017. 9. 10. 제주 → 김포 항공권을 제공받음으로써, 항공권 비용 230,2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위반자의 주장**

- (1) 금품제공자로 특정된 E와 J는 최근 5년간 ○○○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부로부터 수주받은 업체의 하청업체에 불과하며, 위반자는 위반행위 당시 ○○○부 M과에 근무하면서 N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건설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공사 감독과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위반자와 금품제공자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
- (2) 골프 및 숙박 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수수액은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회원으로 산정된 금액인데 이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므로, 위 공시된 비회원가가 아니라 F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F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수수액을 산정하는 경우 1인 당 수수액이 2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위반자는 F에게 골프비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캐디피로 12만 원을 부담하였는바, 결국 F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은 없다.
- (3) 음식물 향응 수수와 관련하여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25,000원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 (4) 항공권 수수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항공권 비용은 위반자가 항공권 구매대행을 의뢰한 여행사 직원인 P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위반자가 공항에서 항공권을 수령하면서 위 P에게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이지 F로부터 항공권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직무관련성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고 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금품제공자인 E, J 등이 최근 5년간 ○○○부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업체들은 도로공사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들로서 향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한 위반자가 위반행위 당시 현실적으로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청 ○○○과에 근무한 사실⁷⁾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래에 공사계약체결이나 공사감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등 위반자가 ○○○부 소속 공무원인 이상 건설업은 그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고 관련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골프 및 숙박 향응 수수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에서 통보한 위반사유 기재와 같이 F로부터 2017. 9. 9. 골프비용으로 217,930원, 2017. 9. 10.

7) ○○○부의 과태료부과대상자통보서 첨부서류 '4. 관련자들 인사이동 현황'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1. 2. 14.부터 2014. 2. 9.까지 ○○○청 ○○○과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골프비용으로 224,850원 2017. 9. 9. ~ 9. 10. 숙박비용으로 157,140원을 수수하여 총 599,92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소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F가 회원가로 골프비용 등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자가 제공받은 금품등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회원 할인 가격이 아닌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통상의 거래가격'이란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격이어야 할 것인바 골프장 홈페이지에 공시된 비회원가를 바탕으로 위반자가 F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통상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합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반자는 F에게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골프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음식물 향응 수수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 2017. 9. 9. I횃집에서 K로부터 식사비용으로 25,000원은 수수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서는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식사비용은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반자가 K로부터 수수한 식사비용 25,000원은 수수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4) 항공권 수수 여부

기록을 살펴보면 F가 위반자의 항공권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바 이 부분 위반자의 금품 수수 사실은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도 수수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위반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총 599,920원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과태료 액수의 산정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자가 수수한 금품의 종류와 가액, 수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가 수수한 금품 가액(599,920원)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8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19.

가액산정

개별산정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2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8. 9. 18.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B시의회 사무과장으로서 2017. 3. 22. 12:00경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무관련성 있는 E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33,812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 위반자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위반자는 B시의회 사무과장과 E조합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B시의회 사무과의 제반 업무, E조합원의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이 B시의회 조례 재·개정을 통한 건폐율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시의회 사무과장과 E조합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반자는 당시 위 식당에서 총 22명이 식사를 하였고, 식사대금으로 633,000원이 한 번에 결제되었으므로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28,772원으로 3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이 식사를 하고 일괄 결제한 경우라도 각자가 실제로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개별적으로 산정함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득이 전체 식사대금을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인데, 당시 위 식당의 방에서는 위반자, B시의원, E조합의 조합장 및 간부 16명이, 위 식당 홀에서는 B시의원 수행원들과 E조합의 팀장 및 직원 6명이 따로 식사를 하였고, 방과 홀에서 주문했던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서로 달랐던 점, 위반자는 방에서 주문한 고기와 술을 홀에 있던 사람들도 나누어 먹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참석자들의 지위, 방과 홀에서 주문한 음식의 양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식당 방에서 식사를 한 위반자가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위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의 식사대금과는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설령 위반자가 E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음식물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반자는 당시 제공받은 음식물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라는 청탁금지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의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위 및 가액 등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0.

가액산정

감정가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B

주 문 위반자들을 각 과태료 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공단 이사장이고, 위반자 B는 위 공단 직원인 사실, 위반자 B는 2017. 3. 31. 위반자 A에게 14만 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하였고, 위반자 A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들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점, 위 나무의 제공 경위 및 제공된 나무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것이다.

위반자들은 위 나무는 폐목으로서 거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비록 위 나무가 포크레인 작업 중 일부 손상되긴 했으나, 이를 감안하여 위 배나무 가격을 감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나무는 위반자 A의 집 마당에 식재되어 잘 자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위반자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과태료 액수에 관하여 보면, 위 법률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자들이 위 나무를 주고받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나무는 위반자 B의 모친이 경작하는 과수원을 정리하던 중 이미 포크레인에 의해 손상된 채 뽑혀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제공한 금품 가액의 2배 남짓에 해당하는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3호, 제8조 제2항,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26.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낙찰예정자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4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B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이천시 입찰공사건 'C공사'에 낙찰 예정자로 적격 심사중에 해당 공사의 감독관인 공무원에게 2021. 8. 23. 14:00경 합계 39,600원 상당의 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 위반 금액 2배 상당액인 70,000원(천원 이하 단위는 절삭)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3조 제5항 제3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6.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연속 금품 제공

▶ 춘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21. 9. 24.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75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이 사건 위반사실의 요지

위반자는 B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D(C어린이집 지도교수)에게 2016. 9.경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2016. 11.경 25,000원 상당의 케이크, 2017. 5.경 150,000원 상당의 떡, 2017. 10.경 200,000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총 575,000원(= 200,000원 + 25,000원 + 150,000원 + 20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2. 위반자 주장의 요지

- 가. 2016. 9.경 제공한 200,000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제공한 금품이므로 위반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2017. 10.경 제공한 한우는 200,000원이 아니라 150,000원이다.
- 다. 위반자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 지도교수인 D와 사제관계에 있고 D는 원장의 채용, 어린이집 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없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 라. 위반자는 D 뿐만 아니라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전원에게 위 금품을 제공하여 1인당

금액이 5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2016. 9.경 제공한 금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청탁금지법은 2016. 9. 28. 시행된 사실, 2016년 추석은 2016. 9. 15.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2016. 9.경 D에게 추석 선물로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부분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반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17. 10.경 제공한 금품의 가액에 대한 판단

위반자는 2017. 10.경 제공한 한우가 15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한 간이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영수증의 형식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제출한 영수증 만으로는 위반자가 제공한 한우의 가액을 150,000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 1)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위 법률의 제정취지를 고려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때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2)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의 위반자에 대한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위반자는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는 C어린이집의 원장인 사실, D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이자 C어린이집 지도교수인 사실, 대학교에서 설치한 산학협력단의 목적, 취지, 성격 및 어린이집과 유아교육과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D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권한 유무에 관계없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직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반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료·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인지 여부

위반자는 2016년 크리스마스, 2017년 스승의 날 및 추석을 맞이하여 D에게 음식, 한우 등 총 3회에 걸쳐 37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비교적 연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고, 제공한 금품의 가액도 적지 않은 점, 위반자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들 전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아교육과 교수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만으로는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D에게 제공한 금품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료·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위반자는 B대학교가 위탁운영하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D(C어린이집 지도교수)에게 2016. 11.경 25,000원 상당의 케이크, 2017. 5.경 150,000원 상당의 떡, 2017. 10.경 200,000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 총 375,000원 (= 25,000원 + 150,000원 + 20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한편 과태료 액수는 위반자의 위반 경위, 위반자가 제공한 물품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이 정한 최하한인 2배에 해당하는 75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27.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연속 금품 제공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

사 건 2019과16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주식회사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우체국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자로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감리원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C, D에게 식사와 선물 등으로 총 64회, 총 1,138,000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같은 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에 관하여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으므로, 설령 제공되는 금품등이 가액기준 내의 것이라도, 수회에 걸쳐 제공됨으로써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횟수, 빈도, 명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공된 금품등의 대대수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가액기준점위 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공사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직무관련자인 감리원에게 비교적 단기간 내에 매우 빈번히 금품등을 제공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났다고 볼 것이므로, 위반자는 같은 조 제5항에 위반하였다고 볼 것이다.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3.

● 수령내역 : 1,138천원(식대·선물로 감리원 2명에게 제공)

(단위 : 천원)

구 분	제공기간	회수	합계금액	1회, 인당	비고
중 식	2018. 6. 12.~11. 6.	59회	802	약 7	
회 식	2018. 7. 17.~10.16.	4회	176	약 22	
추 석	2018. 9. 19.	1회	160	80	한우부채살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실업급여 수급자 선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결정

사 건 2021과1028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5,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23조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인 2021. 3. 8. 실업인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한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과 인터넷 실업인정신청서 제출방법 등을 안내받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되자, 2021. 3. 8. 17:55경 고용센터 담당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11,000원 상당의 롤케익을 위 고용센터 창구에 둔 채 귀가함으로써 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가액, 그 제공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4.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감사 기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

사 건 2019과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2. 13.~2. 22. B소방서 종합감사기간임에도 B소방서 소방행정과장 C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식사비 333,142원 상당의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4.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감사 기간

▶ 대구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10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19. 7. 1.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7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위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르면, 위반자는 B소방서 소방행정과 행정안전팀원으로서, B소방서 종합감사기간인 2019. 2. 11.~22. 'C' 등 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소방안전본부 D를 포함하여 E팀원 6명에게 별지 '식사 제공받은 개인별 내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수수 금지 금품인 식사비 총 333,142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반자의 주장

- 가. 위반자가 제공한 식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한다.
- 나. 위반자는 B소방서 간부들의 결정에 따라 단순히 식사비를 계산한 당사자에 불과하고, 상급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었다.

3.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하여

-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 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들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에 관하여는 목적상의 제한이 있는바, 설령 제공되는 금품등이 가액기준 내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위반자는 소방행정과 행정안전팀원으로서 B소방서를 감사하러 온 소방안전본부 E팀에게 감사기간 동안 음식물을 제공하였는바, 음식물을 제공한 시기, 제공받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볼 때 이 사건 음식물 제공이 공직자들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위반자는 당시 B소방서 구내식당이 협소하고 복잡하여 E팀이 식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려 감사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아 인근 식당에 데리고 갔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식사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식사비 제공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식사제공을 받은 E팀은 위반자가 식사비를 계산하려고 할 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보면, 위반자는 식사비 제공이 위법함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가 E팀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목적상의 제한을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위반자가 제공한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반자는 F 등 상급자들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결정된 사항을 단순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반자는 B소방서 행정안전팀원으로서 자신도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② 식사제공을 받은 E팀원은 위반자가 식사비를 계산하려고 할 때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에 미루어 보면, 위반자가 식사비 제공 당시에도 식사비 제공행위가 위법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나아가 위반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7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28.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기프트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결정

사 건 2019과1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90,000 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9. 6. 3. 위반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에게 휴대폰으로 13,500원 상당의 설빙 딸기 마카롱설빙 기프트콘, 20,300원 상당의 너만콤 완벽한 디저트 세트 기프트콘을 각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12.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교수와 학생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8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위반자는 B대학교 ○○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C는 위 학교 ○○과 조교수로 위반자를 지도하고 성적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다.
- 나. 위반자 등 9인의 위 학교 ○○과 학생들은 2016. 10. 10. 18:00경 위 학교 D건물 지하 1층 실습실에서 C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30,000원 내지 40,000원을 각출하여 3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30,000원 상당의 케이크, 10,000원 상당의 꽃다발을 구입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였다.
- 다. C는 그 자리에서 위반자를 포함한 학생들에게 위 상품권, 케이크, 꽃다발을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C에게 합계 340,000원 상당의 상품권, 케이크 및 꽃다발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C는 B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2호 다목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하고, C가 위반자를 지도·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반자가 C에게 위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허용되는 가액기준을 상당히 초과하였을 뿐 아니라,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이 위 가액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위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반자 등 9인의 학생들은 모두 B대학교의 요리경연대회출전 동아리 구성원들이고 C는 위 동아리 지도교수로서 위반자 등은 동아리 지도교수인 C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와 같은 생일파티를 기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반행위일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불과 2주도 되지 아니한 시점이었고, 당시 만 20세로 대학교 1학년 학생에 불과했던 위반자로서는 범위반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반자에 부과할 과태료 금액은 과태료의 최저금액에 근접한 8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8.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

행정심판 청구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29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1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위반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2016. 5. 30.경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한 주택매수확인서 등 각종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비공개 결정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되자, 2016. 8.경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나. B와 C(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는 위 행정심판의 서류 확인 및 사실관계 조사, 조사 결과의 행정심판위원회 상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6. 11. 말경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다른 공무원과 통화하던 중 담당 공무원이 신혼여행 중임을 알게 되자, 2016. 12. 2. 50,000원을 우편환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위반자는 2016. 12. 5. 9:40경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안전 처리를 부탁한 후 위 우편환 발송 사실을 알렸다.

라. 담당 공무원은 2016. 12. 5. 10:00경 D과 소속 주무관으로부터 위 우편환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우편환을 위반자에게 소포로 반송한 후 소속 기관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위 우편환 수령 및 반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이 사건에서 담당 공무원은 위반자의 행정심판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반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만, 위반자가 제공한 금원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로 한다.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반자는 예전부터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업무관계로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만 하던 관계였던 점, ②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 등을 알린 바 없고, 위반자가 우연히 담당 공무원의 부재 사실을 문의하던 중 결혼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 ③ 위반자는 전화통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우편환을 발송한 사실을 알리면서 업무처리를 부탁하기도 하였던 점, ④ 우편환을 발송한지 불과 4일 후인 2016. 12. 6.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위반자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자료의 공개를 결정하는 등 담당 공무원과 위반자와의 업무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⑤ 담당 공무원이 위반자의 행정심판 사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면 위반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이 결혼을 축하할 목적으로 제공한 축의금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금품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물품 제공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민원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5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 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반자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50,000원 정도인 점, 그 밖에 위반자가 물품을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1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8.

제6호
공식적
행사

골프대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사 건 2021과4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가 법원에 통보한 위반 사실은, □□ (이하 ‘이 사건 본부’라 한다)에서 □으로 근무 중이던 위반자가 2019. 10. 22. 사단법인 □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가 주최하는 ‘□대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석함에 있어 이 사건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통(임대 버스)을 무료로 제공받고, 골프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건 협회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금품등을 수수(교통 46,150원, 골프비용 172,500원으로 산정)하여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므로, 이에 관한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반자가 ‘공직자등’이어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금품등’을 받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반자는 스스로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인정하고, 또한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는 명백하기도 하다. 위반자는 단지 자신의 행위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또는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지되지 않는 것이라 주장할 뿐이다.

만일 이 사건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그 참석에 관하여 임대 버스 정도의 교통을 제공받거나 행사의 본질적인 비용으로서 그 액수가 거액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골프 비용을 면제받는 것은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위반자가 이 사건 행사 과정에서 수수한 금품등은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이 사건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는 □법에 따라 설립된, 경마의 시행권을 독점하는 법인이다. 경마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주에 출전시킬 경주마가 필요하고, 경주마는 마주에 의하여 □에 등록되어야 한다. □는 마주의 등록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의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등록 심의는 지역 본부에서 행한다. 위반자는 □마주등록심의위원회 위원이므로, 마주들의 협회인 이 사건 협회와 직무관련성은 당연히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

② 물론 우월한 지위에 있는 단체 혹은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그 반대 단체 혹은 그에 소속된 임직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행사는 이 사건 협회가 □지역의 경마와 관련된 제반 관계자(마주, 조교사, 생산자, □)와의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한 명목으로 시행한 것인데, 그 명목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적이 접대 등에 가까웠는지가 문제일 따름이다).

③ 이 사건 협회는 2019. 9. 20. 무렵 이 사건 본부에 이 사건 행사에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면서 별도로 당시 □회장이었던 □에게도 참석을 요청한 점, □은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이 사건 본부에 ‘골프 행사를 통해 잘 화합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본부는 참석자를 모집하여 총 7명의 참석자를 확정하였으며, 이 사건 행사에 총 3,960,000원 상당의 골프공 4피스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위와 같은 이 사건 본부의 의사결정은 대체로 공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위반 사실 통보서에는 참석자 모집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직원도 참석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모집이 은밀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은 이 사건 행사를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평가할 수도 있게 하는 사정이다. 그리고 위반 사실 통보서에는 이 사건 행사는 전체가 식사·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반면, 위반자는 제반 관계자의 현안 대화시간 등이 중점적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골프 행사'를 식사·접대 위주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아주 그릇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를 무조건적으로 접대성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기도 하다.

④ 그러나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조교사 측은 2명, 생산자 측은 1명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협회 구성원 중 일부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한 후원금을 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반자 등 이 사건 본부 측 참석자는 아무런 돈을 지출한 바가 없다. 위반자는 위 3,960,000원 상당의 물품 지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지만, 이와 본인이 직접 돈을 지출한 것을 동일시할 수는 없고, 지원한 물품이 이 사건 행사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조교사나 생산자 측 참석자도 본인의 돈을 직접 지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석자 자체가 1 ~ 2명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이 사건 행사에서 이 사건 본부를 특별 취급한, 즉 이 사건 본부 측 참석자는 접대의 대상이었다는 것이고, 아무런 돈을 지출한 바가 없는 위반자가 이러한 사정을 몰랐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나아가 통보된 위반사실상 문제되는 가액은 교통 46,150원, 골프비용 172,500원에 불과하나, 식사비 역시 있을 것이다).

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9. 27. 이 사건 위반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협회에 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10.

제6호
공식적
행사

영화세미나

대전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52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B, C 주식회사

주 문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1) 위반자 A는 관세청 D로서 통신인프라 구축, 정보보안운영, 관리 등 관세청 E과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위반자 B는 관세청 E과에서 내부정보시스템, 통신인프라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3) 위반자 C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위반자 A, B는 2016. 10. 26. 18:30경 ○○시 ○○구 소재 G 신관 지하 5층에 위치한 H에서 위반자 C가 주최한 I 영화세미나(이하 '이 사건 영화세미나'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다.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서 위반자 A는 식사를 마치고 세미나가 종료된 후 선물로 지급된 수건 1장을 받고 돌아갔고, 위반자 B는 식사와 세미나에 이어 상영된 영화를 관람하였다.

라.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서 제공된 식사의 1인당 단가는 30,000원, 영화의 1인당 단가는 20,000원, 수건은 1장당 2,500원이다.

마. 관세청장은 위반자 A, B의 이 사건 영화세미나 참석과 관련한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자들의 각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6. 11. 15.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0,000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과태료 부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

3. 판단

가. 위반자 A, B와 위반자 C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1) 위반자들의 주장 요지

관세청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등을 담당하는 주관업무부서는 J과이고 위반자 A, B가 소속된 E과는 기존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만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외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또한 관세청은 위반자 C의 상품에 상응하는 시스템으로서 정부 차원의 통합전산시스템을 이미 사용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이 위반자 C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설령 계약이 필요하다더라도 정부의 모든 계약은 조달청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이루어지므로 관세청 D 소속 직원에 불과한 위반자 A, B는 위반자 C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

2) 판단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나 각 금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이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업체의 제품, 기술력 등이 될 것이다)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등의 경우 역시 금품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위반자 C는 가상화, 클라우드, 빅데이터 구축, 가상환경의 백업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정보통신장비업체이고 위반자 A, B는 관세청의 D 내지 소속 직원으로서 위반자 C가 개발, 판매하는 상품에 상응하는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을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점, 위반자 A는 2016. 9.경 관세청의 미래발전전략에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미래통관행정의 고도화 방향을 정립, 선진 정보기술(IT) 적용 트렌드 파악,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정보기술 발전 동향 수집 등을 목적으로 IT세미나 및 글로벌 IT업체 방문을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까지 한 점, 위반자 A는 평소 E과 직원들에게 IT신기술 관련 세미나 참석을 독려하여 왔으며 직원들이 신기술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전체 공지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 소식을 알리기까지 한 점, 위반자 B는 출장명령을 받아 출장의 형태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반자 A, B가 현실적으로 관세청의 외부 발주나 계약 체결 업무 등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반자 C와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위반자 A, B와 위반자 C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반자 A, B가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식사 및 영화 등을 제공받은 행위 및 위반자 C가 위반자 A, B에게 위와 같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행사 내용 및 참석자 범위 등

- 이 사건 영화세미나와 관련하여 위반자 C가 작성, 배포한 초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초대 문구 및 행사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초대 문구〉

C의 영화세미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최신 IT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 개봉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부서원들과 함께 오셔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부 일정〉

세미나(간편 식사 제공)
최신 개봉 영화 관람

〈행사 안내 문구〉

신청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 후 신청 사항 변경 및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꼭 C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등록 및 인사 교류를 위한 명함 지참 부탁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사입니다.

- 행사 내용 :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서는 ① SDDC(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를 위한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 NSX, ② 최적의 VD환경 구현을 위한 CISCO 솔루션이라는 두 가지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당시 식사는 모든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듣는 좌석에 앉아 각자의 도시락을 먹는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주제 발표 이후 <력키>라는 최신 영화 상영이 이어졌다.
- 참석자 :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초대 대상은 정부, 공공, 제조, 금융 등 전 산업군의 IT 담당 부서원이다.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실제 참석자는 모두 49명(위반자 C의 직원 6명 포함)으로, 주로 위반자 C의 거래처 내지 IT 관련업체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였다.

나) 위반자 A, B의 참석 경위

위반자 C의 대표이사 F는 위반자 A와 2016. 4. 7. K대학원 L 고위과정(M 고위과정) 제4기를 함께 수료한 동문 사이로 F는 위 고위과정 제4기 회장을 맡고 있다. F는 위 고위과정 동문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초대장을 올려 동문들을 초청했고, 위반자 A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F에게 세미나 참석 의사를 밝혔다. 한편, 위반자 A는 관세청의 E과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대해 안내하며 세미나 참석을 독려하였고, 위반자 B는 그 공지를 보고 당일 오후 출장 신청을 하고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였다.(다만, 위반자 A는 세미나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위반자 B의 참석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반자 C의 기존 영화세미나 등 개최

위반자 C는 2007. 6. 26.경 G의 H를 대관하여 영화세미나를 개최한 이래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정기적(월 1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영화세미나와 동일한 형식의 영화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며,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위반자 C가 개최한 I 영화세미나에 해당한다. 이 사건 영화세미나 개최를 위한 대관료, 식사와 영화 제공을 위한 비용 등은 모두 위반자 C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 절차를 거쳐 지출되었다.

라) 영화세미나에서 제공된 금품등의 형태 및 가액

그동안 위반자 C에서 개최한 영화세미나에서 제공된 식사와 영화는 1인당 식사 72,727원, 영화 27,723원 합계 100,000원 상당이었으나 위반자 C는 이 사건 영화세미나가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인 것을 고려하여 1인당 단가를 식사 30,000원, 영화 20,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H 측과 협상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식사는 기존 영화세미나에서 제공되어 오던 홀 서빙 방식의 디너코스가 아니라 영화관 테이블에 착석한 상태에서 참석자 전원이 각자 도시락을 지급받아 식음하는 형태로 변경되었고 초대장에도 '호텔식 디너코스 제공', '스페셜한 다이닝' 등 기존 초대장 문구 대신 '간편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한편, 위반자 A가 받은 수건 역시 C의 로고가 자수된 홍보용품으로서 참가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위반자 C가 약 10년간 200회가 넘도록 개최하여 온 신기술 홍보 및

문화행사로서 민간기업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참석 대상은 위반자 C의 고객사, IT 관련업체의 임직원 등 IT 관련 업무담당자로서 위반자 C는 담당하는 업무를 위주로 초대 대상을 정하였을 뿐 공무원 기타 특정 집단으로 참석자를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대관한 영화관의 수용 인원 한계상 선착순으로 참가 신청을 받은 점, 이 사건 영화세미나의 행사 내용은 IT 신기술 홍보 및 설명에 이은 최신 영화 상영으로 영화세미나의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이루어졌으며, 당시 제공된 식사는 1인당 30,000원, 영화는 1인당 20,000원 상당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화세미나는 다양한 업계에서 홍보행사로 활용하여 온 세미나 방식으로서 식사에 영화, 음악, 공연 감상 등 문화예술공연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세미나가 사회통념상 특별히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반자 C는 영화세미나 외에도 등산, 마라톤, 가족동반 현장체험 등 다수의 문화체육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오히려 이 사건 영화세미나는 문화예술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 제도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 A, B가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식사, 영화관람을 하거나 기념품을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C의 로고가 자수된 2,500원 상당의 수건은 위반자 C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제작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서 위반자 A가 이를 지급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위반자 A, B가 이 사건 영화세미나에 참석하여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내지 제7호가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고, 위반자 A, B의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반자 C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위반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위반자들을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17.

제8호
사회상규

사회상규의 개념

▶▶▶ 춘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2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9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반자는 2016. 9. 1. ○○경찰서에 'B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위반자)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B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반자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 소속 C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나. 위반자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D로 하여금 C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가로 약 40cm, 세로 약 30cm,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를 전달하도록 하였다.

다. D는 2016. 9. 28. 14:30경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C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반자가 떡을 보내 경찰서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경찰서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요청하였다.

라. C는 위 일시경 ○○경찰서 주차장에 나가 D에게 이 사건 금품을 보낸 경위, D의 신분 등을 물어보았으나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려고 해도 반환받지 않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이 사건 금품을 받아둔 후, 위반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금품을 D를 통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C는 같은 날 15: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경찰서장은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자의 위 금품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된다고 보아 2016. 10. 18.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위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B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C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C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은 각호에서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먼저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반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C가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C는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사회상규의 의미

어느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상 용어는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항에서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형법 제20조에서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일관된 해석을 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사회상규도 이와 통일되게 해석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참조).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통상적인 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18 판결 참조).

이상과 같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의 의미나 판단방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사회상규는 전체 법질서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윤리 및 사회질서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회상규에 해당하여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관행 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관행이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를 이루는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금품 수수가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하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나)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및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를 이루어냈지만 사회의 청렴도는 경제 발전에 걸맞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의 공공부분 부패 인식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부패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청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자들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결정 참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受隨)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아울러 공직자들의 의무로서 공직자들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공직자들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2항).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은 실제로도 법령에 정해진 대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등을 받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게 된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금지'와 금품등 제공금지를 각각 별도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즉, 제2장에서는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제재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금품등 수수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하여,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묻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이와 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이나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이더라도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등에게 제8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른 형사적 제재를(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2항, 제5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의 행정상 제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5항 제3호).

아울러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제9조), 누구든지 위반사실을 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이와 같이 금품등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제8조의 핵심 내용은, 기존 뇌물죄 등과는 달리 금품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존재나 대가성의 결부를 요구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을 원칙적으로 불하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자등 직무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직자등 직무수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다) 이 사건 금품 제공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의 직무 중 범죄의 수사, 특히 고소사건의 수사는 중립적·객관적인 지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수도 있다. 수사 결과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소인은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이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피고소인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소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해당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고소인이 수사 진행 중에, 더욱이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D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하였고 그 가액도 45,000원 상당인바, 이와 같은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의 금품 제공 행위는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위반자는 ○○경찰서에서 이 사건 금품 제공행위와 관련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경찰관이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식으로 드시라는 의미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출석 일정을 조율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여기에 부정청탁이나 대가성의 존재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즉,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3항 위반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고의는 위반자에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고 여기에 부정청탁의 목적이나 대가성 인식 등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요하지 않는다. 특히 고소인인 위반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수사 진행 중인 고소사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규범적 견지에서 범죄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반자와 담당 경찰관의 관계,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금품등 제공의 시점과 경위, 금품등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반자에게 이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과태료 금액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 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위반 정도에 상응한 과태료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금품은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로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담당 경찰관에 의해 이 사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반자에게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9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항,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6.

제8호
사회상규

소액의 감사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2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2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 가. 위반자는 2016. 10. 7. 01:35경 ○○○구 B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경찰서 기동순찰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 나. 조사과정에서 같은 일행이 고성과 난동을 부리는데도 경찰관이 수갑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설득하고 자신에게 커피와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친절하게 대하자, 위반자는 이에 대한 감사 표시로 1만 원권 1장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였다.
- 다. 위반자는 조사가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올 때 1만 원권 1장을 몰래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 라. 경찰관은 위반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1만 원권을 발견한 후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서울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였고, 2016. 10. 7. 09:30경 위반자에게 반환하였다.

2. 판단

-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제2항),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위와 같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제5항). 위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자로 경찰관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직무관련자인 위반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반자는 경찰관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가 경찰관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위반된다.

나.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위반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설사 위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가벼워 처벌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 된다.

1)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고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수사기관의 경우 그 직무관련자 특히 수사대상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이 금품등의 수수가 엄격하게 금지된 수사기관에 그 직무관련자는 그 의도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관련자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소액의 금품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반자는 경찰관이 명백히 거부의를 표시하였음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경찰관은 위반자의 금품등 제공행위로 인하여 자진신고 후 그 경위에 대하여 감찰관에게 진술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금품등을 반환하기 위하여 위반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등의 액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다만 위반자의 행위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경찰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등의 액수가 적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리라고 잘못 생각하고 위반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과태료 액수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액수의 하한(제공된 금품등 가액의 2배)으로 결정한다.

3. 결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7.

반환

반환의 의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

사 건 2017과1189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6. 3. 14.부터 2017. 7. 30.까지 B로, 2017. 7. 31.부터 현재까지 C로 각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B로 근무하였던 2016. 10. 20.부터 2017. 7. 27.까지 부하 직원인 D 등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713,900원 상당의 향응(이하 '이 사건 향응'이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3. 판단**가. 과태료 부과여부**

-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는 B의 지위에 있었고, 그 부하직원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향응을 제공 받은 것이므로, 위반자와 위 부하직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서 금지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 2) 위반자는 자신에게 이 사건 향응을 제공한 사람 중 E에게 2016. 10. 26.부터 2017. 7. 9.까지 합계 74,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였고,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향응 액수에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는 그 문언상 수수한 금품등 자체를 반환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반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반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과태료 금액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 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 등의 가액, 그 밖에 위반자가 이를 제공한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 9.

반환

지체없이

창원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4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7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처에서 자산임대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공사 자산인 ‘○○시 □□□구 ☆☆☆동 ...번지’ 임대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6. 30. ○○시 □□□구 ‘B수산’에서 직무관련자(임차인) C을 만나 식사를 한 후, 직무관련자가 식대 70,000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하자 위반자는 “각자 본인 음식 값을 내자”고 반환의사를 지체 없이 나타냈으나 해당 결제를 즉시 취소하지는 않았고, 5일 후인 2017. 7. 5. 모바일 뱅크를 통해 식사비용 35,000원을 직무관련자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3.

반환

지체없이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1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1. 위반자를 과태료 금 1,425,800원에 처한다.
(아래 제2위반사실 : 92,000원, 제3위반사실 : 1,333,800원)
2. ① 2017. 7. 18. 11:40경 위반사실과, ② 2017. 7. 26.자 위반사실에 대하여 각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법원에 통보된 위반사실

위반자는 2015. 8. 5.경부터 ○○노동청 B지청(이하 'B지청'이라고 한다)에서 산재예방지도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할지역 내에 있는 제조·건설사업장 및 안전보건관련 유관기관·단체에 대해 산재예방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감독·단속·행정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바, 직무와 관련하여,

가. 제1위반사실

2017. 7. 18. 11:40~12:40경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부장 F 등 3명과 식사를 하여 위 F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나. 제2위반사실

2017. 7. 18. 18:30~20:20경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I직업전문학교장 J 등 2명과 식사를 하여 위 J로부터 9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다. 제3위반사실

(1) 2017. 7. 25. 17:55경 K아파트 주차장에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M으로부터 389,000원 상당의 통기타를 교부받았다.

(2) 같은 날 18:10~20:00경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M 및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 전무이사 Q와 함께 식사를 하여 위 Q로부터 55,6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라. 제4위반사실

2017. 7. 26. 18:50~20:40경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 이사 S와 식사를 하여 위 S로부터 3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위반자의 주장

위반자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며 과태료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각 위반사실은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된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 제2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위반자는 B지청 산업안전재해 예방지도과장으로서 산재예방지도과 직원의 복무·지시사항 전달, 해당연도 초 사업주 대상 산업안전보건정책 방향 설명회, 매월 신규착공 건설현장 소장 교육, 기관 평가대비 총괄, 산재예방캠페인 등의 홍보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는바, 위반자가 실제 현장인 사업장에 나아가 지도·점검 또는 감독할 기회가 없고, 현장 지도의 경우에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이 복수로 출장을 나가 점검·지도하므로 위반자가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완화 또는 가중할 수 없는 까닭에 특정사업장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① 제1위반사실의 경우 F가 근무하고 있는 E가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관리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그 금액이 30,000원이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② 제2위반사실의 경우, J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곳이며, 동석했던 T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T가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3위반사실의 경우 M이 중고기타가 있으니, 빌려가라고 강권하여 빌리게 된 것으로, 관사에 가서 보니 기타가 새것이어서 곧바로 “기타를 칠 줄도 모르고 배울 계획도 없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말하며 돌려준 것인바, 이는 개인 소유 물건을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금지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Q와의 식사자리는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준 M이 그 보답으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여 응했던 것인데, 그 자리에 위반자 모르게 Q가 일방적으로 지불한 것에 불과하다.

④ 제4위반사실의 경우 S는 2001년경 의정부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 우연히 2015년 말경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서로 수차례 약속 끝에 식사를 하게 된 것으로 개인적인 사교모임에 불과하다.

3. 판단

① 금품제공자로 특정된 G(부사장 H), N(대표 O) 등은 □□부가 발주한 공사의 하청업체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반자와 청탁금지법상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위반자는 처음부터 H, O에게 접대를 받고자 후배들과의 자리를 주선한 것이 아니었고, 위반자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한 후배들 역시 △△관리청 소속 7, 8급 공무원들로서 위반자와 독립된 지위에서 접대를 받은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③ H, L로부터 수수한 식사비용은 30,000원 이하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금품등이라 할 것이다.

④ 위반자의 일행이 O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의 가액은 407,000원이 아닌 175,000원이고, 그 중 O가 위반자에게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은 25,000원(=175,000원 / 7명)이다.

4. 결론

가. 관련 법규 및 법리

(1)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 등은 제외한다.

(2)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판례는 뇌물죄의 경우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고 하는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뇌물죄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실시 법리는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제1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7. 18. 11:30경 위 B지청에서 재해예방캠페인 관련 회의를 마치고 ‘D’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F 등 3명과 점심식사를 한 후 식사비용 64,000원을 F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반자가 F 등과 식사를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B지청은 2017년도 상반기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로 하였으나, B지청 소속담당 직원이 4명에 불과하여 캠페인을 벌이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부족한 감이 있어, 실효성이 있는 캠페인을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참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유관기관과 관내 각 사업장의 안전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모임(약칭 'U') 회원들도 참여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들에게 참석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2017. 7. 18. 오전에 B지청에서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노동청 B지청 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인 위반자, △△공단 산업안전부장 및 교육문화부장, 제조업 안전관리전문기관 3개소, 보건관리전문기관 3개소, 작업환경측정기관 4개소, 'U'회원 3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였고 이 회의는 11:30경 종료되었으나, B지청에서 점심은 제공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어가자 위 회의에 참석했던 U의 부회장 F가 위반자에게 식사를 제의했고, 다른 회의참석자인 U 회장 V, U회원 W도 그 식사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를 하게 된 경위가 위와 같다면, 비록 F가 속한 E가 B지청 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산재예방지도과의 관리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위 F 등의 위반자를 만나게 된 것은 B지청의 회의참석 요청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이고, 어떤 청탁이나 로비활동을 하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었던 점, ② 위 회의가 끝난 시간이 11:30경으로 점심시간에 근접한 시점이어서 참석자들도 어차피 점심식사를 해야 했었던 점, ③ 당시 E가 위반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독이나 시정지시 대상에 올라있지도 않았던 점, ④ 식사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들도 일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어떤 청탁이 오고가지 않았던 점(사후에 위반자가 식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업무상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⑤ F가 연장자로서 식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수급하기 어려운 행동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더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식사자리는 위반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사교, 의례에 따른 식사자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설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위반자가 제공받은 식사는 16,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에서 본 판단에 따르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청탁 금지법 제8조 제3항 단서에서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찬가지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할 수 없다).

(2) 제2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위반자가 2017. 7. 18. 18:00경 부하직원인 T의 차량에 탑승하여 위 'H'식당으로 이동한 사실, 위 식당에서 J와 식사를 하고, 그 비용 138,000원을 J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 T은 B지청 B고용센터 기업지원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J는 I직업전문학교장으로서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함께 식사를 했던 위 T 팀장은 기업지원팀 팀장으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지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2017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감독 계획 수립 문서에는 J가 교장으로 있는 I직업전문학교가 그 점검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J와 T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비록 J와 위반자가 오랜 기간 동안 사적으로 친분을 유지한 사이이고, 위반자와 J 사이에는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친교자리에 굳이 J와 친분도 없는 T를 동석시킬 이유가 궁색하다는 점, 위반자는 T의 선배로서 T를 이 사건 식사자리에 데려오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어, T의 관련업무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와의 관계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청탁금지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T의 경우 위반자가 '밥 한번 먹자'고 하여 따라갔다가 위 식사자리에서 J와 동석하게 된 것이고, 식사자리 처음부터 그리고 식사도중에도 그와 같은 자리가 불편하다고 위반자에게 이야기하였으며, 직장선배인 위반자가 식사대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T에게 청탁금지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보건대, 위반자가 수수한 금품등은 식사대금 총 138,000원의 1/3인 46,000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함이 타당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의 경위, 그 금액, 사후 반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수수금품액의 2배에 해당하는 9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3) 제3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가) M으로부터 통기타를 수수한 행위

위반자가 2017. 7. 27. 17:55경 K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청소를 하던 중 L의 대표이사 M으로부터 통기타를 받은 사실, 위 통기타는 M이 구입한 것으로 그 가격은 38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M은 'L'이라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부의 안전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사람인데,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부 지정기관으로서 B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부터 상시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은 기관으로 위반자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위 통기타는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고, 곧바로 M에게 저녁식사 후 커피숍에서 기타를 칠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 다시 가져가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통기타는 신상품으로 상표태그(tag)가 그대로 달려 있는 새 기타였고, 커피를 마신 후 관사까지 데려다 준 M에게 기타를 반환하지도 않은 점, ② 통기타를 교부받은 지 이틀 만에 굳이 새벽에 M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시간 전에 기타를 반환하는 것도 빌린 것을 반환하는 사람의 행위로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는 위반자에게 매우 급하게 통기타를 돌려주어야 할 사정이 생긴 것에 기인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그 까닭은 통기타를 수수한 다음날인 2017. 7. 26. 20:40경 ○○노동청 감사관실에서 위반자에 대하여 압행감찰을 실시하던 중 위반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위반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자, 자신에 대한 어떤 감찰이 진행되고 있음을 눈치 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M은 2017. 8. 2.자 자필확인서에서 위 통기타는 악기사에서 구입하여 자신이 쓰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태그가 그대로 달려있는 새기타였다는 점에서 위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M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위반자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반자는 M에게 통기타를 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과태료 처벌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의 통기타 반환 행위는 위반자에 대한 감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위반자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미연의 처벌을 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즉시 반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힘들어 위반자의 반환행위를 두고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과태료 처벌 예외사유로서의 '반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이하 다른 위반사실에서의 위반자의 반환주장에 대한 판단도 같다).

위 통기타의 가격이 389,000원에 이르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한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의 경위, 그 금액, 사후 반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수수 금품액의 3배에 해당하는 1,16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나) Q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행위

위반자가 위 K아파트 주차장에서 M의 차량에 탑승하여 'O'라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P회사 Q와 함께 3명이 저녁식사를 하고, 그 식사비용 167,000원을 Q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Q는 M이 운영하는 회사의 안전관리 대행 회원사인 'P'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이고, 위 회사는 산업재해예방 관련으로 산재예방지도과로부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장인바, 역시 위반자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금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처벌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Q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 대가 중 3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인 24,000원을 2017. 7. 29. 10:51경 반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전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자의에 의한 반환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의 처벌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식사대금으로 제공받은 금품등의 액수가 55,600원에 이르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함이 상당한바, 그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수의 경위, 그 금액, 사후 반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수수금품액의 3배에 해당하는 166,8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4) 제4위반사실에 관한 판단

위반자가 2017. 7. 26. 18:50경 위 'H'식당에서 R 이사 S와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식사 비용 70,000원을 S가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반자와 S가 이처럼 식사를 하게 된 경위는, 위 두 사람이 서로 알게 된 것은 위반자가 2001년경 ○○청 ○○○지청 산업안전과에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때 사업장을 양주에 둔 R의 대리 직급의 S를 만나게 되면서부터인데, 당시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 이후 위반자가 전출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2015년 말경 B의 한 강연회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연락을 이었던 것인데, 이때 R이 B로 사업장이 이전 되었으며 S도 B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언제 한번 식사를 하자는 여러 차례의 말끝에 위 일시 경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및 앞서본 법리를 고려하면 이 부분 위반행위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① S는 R에서 물품구매파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위반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식사자리에서 위반자의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R의 산재예방업무와 관련한 청탁이나 요구사항 혹은 금품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③ 식사자리 이전에 두 사람이 B에서 R의 산재업무 등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담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식사를 마치고 위반자와 S가 서로 결제를 하려고 옥신각신하던 중 식당 주인이 S의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반자가 취득한 음식물 가액이 35,000원인데, 위 식당이 한우를 비롯한 고기를 파는 식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금액은 통상의 식사비용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금액은 통상의 식사비용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반자와 S의 식사자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의 친목 자리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에 통보된 바와 같이 이 부분 위반사실이 위반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제4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위반자의 각 위반사실 중 제2위반사실과 제3위반사실에 대하여, 위반자를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44조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기로 하고, 제1위반사실과 제4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23.

반환

지체없이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6과4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를 과태료 금 3,6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B대학교 C캠퍼스 D과 교수로서, 2016. 10. 30. 장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졸업생 1인, 강사 5인으로부터 각 20만 원의 축의금을 받아 법정한도 10만 원을 초과한 경조사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과태료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의 내용과 정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금품등의 수수 경위, 금품등의 종류와 가액,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반자가 청첩장을 배포하는 것을 넘어 본인의 카카오톡 배경화면에 결혼식을 공지하는 글을 기재하였고 일부의 지인들에게는 모바일 청첩장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번호도 전달함으로써 이것이 전파되어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지인과 직무관련자들에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점, 비록 위반자가 법정한도 초과금액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6. 11. 9.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고 2016. 11. 14. B대학교 경영평가실에서 위반자에게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권유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반자의 자발적인 반환으로 볼 수 없는 점(위반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오후까지 C캠퍼스에서 수업하고 목요일 밤에 경기도의 집으로 퇴근하기 때문에 축의금의 개인별 금액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반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발적인 반환을 위한 상당한 기간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자에게 금품 등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검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위반자가 축의금 명목으로 대학원 재학생 2인으로부터 받은 각 금 10만 원, 1인으로부터 받은 금 5만 원도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태료 재판은 소속기관의 장이 ‘위반행위’를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개시되는 것인데(청탁금지법 제14조, 제23조 제7항) B대학교 총장은 위반자가 축의금 명목으로 ‘법정 한도인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여’ 위반사실을 통보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과태료재판의 경우 법원으로서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2. 10. 19.자 2012마1163 결정 참조) 비록 대학원 재학생들이 교부한 축의금이 위 위반행위와 동일한 결혼식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위반행위에 특정된 금품 제공자와는 별개인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태료금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결정되므로 대학원 재학생들의 축의금을 포함시키느냐에 여부에 따라 산출되는 과태료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위반사실과 사실 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대학원 재학생들로부터 교부받은 축의금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29.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2023

Ⅲ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규정 내용
2. 관련 판례

01 규정 내용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은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수 금지

< 사례금 상한액 >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시간당 상한액	40만 원	100만 원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과 관계 없이 60만 원 초과 불가	제한 없음

+ 초과 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등이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함

+ 벌칙

- 초과 사례금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02 관련 판례

초과
사례금

미신고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1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관 소속 직원으로서 2020. 2. 21. 사단법인 B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수행함에 있어 총 100만 원의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3조 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3. 17.


 초과
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

청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9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기관 학예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7. 7. 26. 15시부터 18시까지 C재단에서 외부강의를 하면서 합계 61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령하고도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금액 수령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8. 1. 17. 대통령령 제2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느바, 위반자가 나중에 법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19.

초과
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8과16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7. 11. 13. 외부강의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고도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자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에 초과 사례금 400,000원을 모두 반납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10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6.


 초과
사례금

미신고 및 미반환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1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66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17. 2.부터 같은 해 8.까지 외부강의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일일 최고금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고 그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그 합계 금액은 66만 원이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2018. 1. 17. 대통령령 제2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해당 한다(개정 시행령 조항 중 외부강사의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본 건 위반행위의 경위, 나중에 위 금액을 반환한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금액을 결정한다.

2018. 9. 13.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2023

IV

기타

적용대상

공직유관단체 지정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3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인바, 2016. 10. 12. C대학교 예술대학에서 'D'이라는 외부강의를 한 다음, 공직유관단체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상한액인 300,000원을 초과하여 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재단법인 B을 2016년도 공직유관단체의 고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 2017. 6. 30.에야 인사혁신처고시 2017-4호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것이 고시된 사실, 위 고시가 반기말까지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하는 것인 점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재단법인은 2016년도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아직 지정 전이라면 공직유관단체가 되지 않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의 문언상 분명하고, 따라서 위반자의 2016. 10. 12.자 위반 사항은 위반자가 아직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해당되기 전의 것이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7.

적용대상

운동부지도자

청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위 반 자**
1. A
 2. B
 3. C
 4. D
 5. E
 6. F
 7. G

- 주 문**
1. 위반자 A에게 과태료 58,889,600원을,
 2. 위반자 B, C, D, E, F, G에게 연대하여 과태료 58,889,6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위반자 A은 2007. 1. 1.부터 2020. 8.말까지 H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지도자(핸드볼 코치)로 재직한 자, 위반자 B, C, D, E, F, G는 각 위반자 A의 재직 당시 위 고등학교 핸드볼부에서 활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가. 위반자 A

위반자 A는 2016. 10. 17. B의 계좌로 700,000원을 위반자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2016. 10. 17.부터 2020. 7. 6.까지 B 등 학부모들로부터 별지 위반행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29,444,800원을 받았다.

나. 위반자 B, C, D, E, F, G

위반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29,444,800원을 제공하였다.

2. 위반자 A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위반자 B, C, D, E, F, G에게 같은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9.

적용대상

유치원 교사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6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3,05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70,000원을, 위반자 C에게 과태료 55,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2018.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D유치원의 교사로서 위반자 B, C 등 학부모 13명으로부터 별지 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위반자 B는 자녀의 담임교사인 위반자 A에게 2018. 3. 14경 스타벅스 텀블러 기프티콘(43,000원 상당)을, 2018. 4. 6.경 스타벅스 아이스아메리카노 10잔 키프티콘(41,000원 상당)을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자 C는 자녀의 담임교사인 위반자 A에게 2019. 3. 9.경과 2019. 4. 11.경 스타벅스 기프티콘(부드러운 디저트세트, 12,700원 상당)을 각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4.

위반행위일람표

연도	금품 지급일 (총무 계좌 출금일)	금액	지급방법	총무 계좌에 기록된 세부내용				비고	
				유무	총무 계좌번호	입출금명	거래내용		은행 코드
1	2016-10-17	700,000	□ 약의 □ 로 이체				자등이체		
2	2015-11-16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2016년 학교 회계연도 기준 (2016. 3. 1. ~ 2017. 2. 28.)
3	2016-12-23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4	2017-01-16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후 □ 에게 전달				스마트당행		
5	2017-02-11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6	2017-03-09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7	2017-04-15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8	2017-05-23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9	2017-06-26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2017년 학교 회계연도 기준 (2017. 3. 1. ~ 2018. 2. 28.)
10	2017-07-12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1	2017-09-16	1,0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2	2017-09-16	4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3	2017-10-16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4	2017-10-31	1,4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15	2018-01-15	700,5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급여		
16	2015-05-25	700,5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17	20158-06-14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2018년 학교 회계연도 기준 (2018. 3. 1. ~ 2019. 2. 28.)
18	2018-07-19	700,5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19	2018-08-20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마트당행		
20	2018-10-15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21	2019-01-04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22	2019-01-19	2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명절비 스마트당행		
23	2019-02-18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S-기업은행		
24	2019-04-01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25	2019-04-01	2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경기 스마트당행		
26	2016-04-19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27	2016-04-19	2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경기 스마트당행		
28	2019-05-14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29	2016-05-15	2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스승의날선물 스마트당행		
30	2016-06-07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이체후 현금 전달				Coach 스마트당행		
31	2019-07-18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2019년 학교 회계연도 기준 (2019. 3. 1. ~ 2020. 2. 28.)
32	2019-07-18	2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대회비 스마트당행		
33	2019-08-30	700,500	총무 계좌에서 이체후 현금 전달				Coach8		
34	2019-09-17	2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CD현금		
35	2019-10-21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Coach9 스마트당행		
36	2019-10-21	2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게임비 스마트당행		
37	2019-10-21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Coach10 스마트당행		
38	2019-11-01	142,300	총무 계좌에서 이체후 현금 전달				명절선물홍삼표		
39	2019-11-19	700,000	총무 계좌에서 □ 계좌로 이체 후 현금 전달				쌤 스마트당행		
40	2019-12-07	700,500	총무 계좌에서 이체 후 현금 전달				CD현금		
41	2020-01-17	9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현금		
42	2020-02-20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현금		
43	2020-03-20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코치지원비 현금		2020년 학교 회계연도 기준 (2020. 3. 1. ~ 2021. 2. 28.)
44	2020-04-17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코치지원비 현금		
45	2020-05-15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코치지원비 CD현금		
46	2020-06-04	7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코치지원비 CD현금		
47	2020-06-24	2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게임비 CD현금		
48	2020-07-05	200,000	총무 계좌에서 인출 후 현금 전달				게임비 CD현금		
	총 합계	29,444,800							

적용대상

시의원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23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 A와 B에게 각각 과태료 5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전직 C시 시의원으로서 D조합 조합장인 위반자 B로부터 2018년 2월 경 명절 선물로 250,000원 상당의 정육 세트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반 금액 및 위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과태료 금액은 [법정 하한 : 500,000원(250,000원×2), 법정 상한 : 1,250,000원(=250,000원×5)] 주문과 같이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제5항,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8.

적용대상

언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결정

사 건 2019과2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500,000원, 위반자 B에게 과태료 6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1. 25.

[위반자 A]

1. 위반자는 C 기자로서 2017. 9. 24. 06:45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D' 골프장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C 카메라 기자 B, G 상무이사 H와 함께 골프를 쳤다. 위반자는 골프장 회원인 F의 동반자 할인을 받는 등 F로부터 총 228,875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2. 위반자는 2017. 10. 9. 11:53경 1항 골프장에서 F, 전남도청 I, J언론 기자 K과 함께 골프를 쳤다. 위반자는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총 235,875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3. 위반자는 2018. 2. 25. 12:38경 1항 골프장에서 F, L 전무이사 M, N대학교 총장 O와 함께 골프를 쳤다. 위반자는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총 244,5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4. 위반자는 2018. 3. 25. 13:00경 1항 골프장에서 F, M, O와 함께 골프를 쳤다. 위반자는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총 189,75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위반자 B]

위반자는 C 카메라 기자로서 2017. 9. 24. 06:45경 전남 해남군에 있는 'D' 골프장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C 기자 A, G 상무이사 H와 함께 골프를 쳤다.

위반자는 골프장 회원인 F의 동반자 할인을 받는 등 F로부터 총 228,875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적용대상

건축 감리인

청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B공사의 시공사 소속의 감리담당자로서 2018. 2.부터 2019. 6.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숙소비용 90만 원, 식대 456,000원 합계 1,356,000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반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질서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위반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과태료 액수를 정한다.

2021. 7. 20.

적용대상

법원 감정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18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 주 문**
1. 위반자의 2017. 9. 6.자 식사를 제공받은 점과 2017. 11. 8.자 식사를 제공 받은 점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60,000원을 부과한다.
 2. 위반자의 2017년 8월경 간식 및 식사를 제공받은 점에 대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반자는, B건축사사무소 현장 감정팀장으로, ○○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원 ○○지원 2017가합100528호 하자보수금 사건에서, 아파트의 하자 보수비 감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 가. 2017. 9. 6.경 ○○시 소재 D식당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로부터 19,666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 나. 2017. 11. 8.경 ○○시 소재 F식당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로부터 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 등에 대하여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은, 위반자가 2017년 8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을 감정업무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224,930원 상당의 간식과 식사를 접대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 사무실을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었고, 그 외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던 것으로 보여, 위반자가 제공받은 간식이나 식사의 수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반자가 2017년 8월경 224,930원 상당의 간식 등을 제공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7.

제재
(制裁)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1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20. 11. 2.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의 모친으로서 2019. 5. 23. 담당 심사관에게 50,000원 상당의 초콜렛, 화장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법성의 정도, 위반행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은 공직자등에게 소정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제공자에게 부정청탁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반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27.

제재
(制裁)

위법성 착오

▶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295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21. 4. 30.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95,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도 ○○교육지원청 B과장 등으로 근무하던 위반자가 2018. 7. 22.경 사업자 C로부터 D 1매 65,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2018. 1. 5. C의 시아버지상에 조문하면서 조의금 50,000원을 전달하였는데, 이후 자신이 2018. 7. 5. ○○도 ○○교육지원청 B과장으로 전보되자 C가 와이셔츠를 보내온 것으로서, 예의를 지킬 목적으로 대가없이 제공된 가액 50,000원 미만의 물품으로 인식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반자가 조의금을 전달한 날과 와이셔츠를 제공받은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와이셔츠 가액의 산정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의 행위가 위법성의 착오에 기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6. 25.

제재
(制裁)

책임감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결정

사 건 2019과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와 B는 C과 계장 4급인 D에게 2017. 12. 27.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2018. 12. 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 위반자와 B은 위 각 금액을 6:4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 사실, 위반자와 B은 2019. 1. 4. 위와 같은 금품 등 제공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반자는 공직자 D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반자는 위와 같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 위반자가 D에게 적극적으로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D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부득이 이를 제공한 사정, 제공한 향응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의해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9. 16.

과태료
부과

소속기관장이 아닌 자의 과태료 부과 통보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3. C

주 문 위반자들에게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 유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공직자인 위반자 A, B가 위반자 C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2. 8. 이 법원에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소속기관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반자 A, B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립학교인 D고등학교의 교직원인바, 그 소속기관장은 청탁 금지법 제2조 제4호, 제1호 라목에 따라 D고등학교장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반자들의 위반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권한 없는 사람이 통보한 위반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추후 위반사실 통보 권한을 가진 정당한 소속기관장의 통보에 따라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2022. 2. 10.

과태료
부과

소속기관장이 아닌 자의 과태료 부과 통보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65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 위 반 자**
1. A
대리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운, 기효진, 문병욱
 2. B
 3. C

주 문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 유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이 광주광역시 동구청 소속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4.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였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항에 의하면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소속기관장이라고 할 것이고, 공직자에게 다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였다면 부정청탁을 한 다른 공직자에 대하여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의 소속기관장 외에 부정청탁을 한 다른 공직자의 소속 기관장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은 위반자들에 대한 소속기관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광주광역시 경찰청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기초로 하여서는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추후 소속기관장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절차가 다시 개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7.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주체

▶ 춘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위 반 자 A

약식결정일 2020. 2. 5.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2,000,000 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B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경위

- 1) B군수는 2019. 10. 25. 이 법원에 ‘위반자가 2018. 4. 1. 면접시험위원 C 상대로 청탁을 하는 등 3회에 걸쳐 부정청탁을 하였다’는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 2) 이 법원은 2020. 2.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1차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행정청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지 않은 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만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행정청에게 1차적 과태료 부과처분권이 있으나 행정청의 부과처분이 없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반사실 통보를 각하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 3) 검사는 2020. 2. 14. ‘관련 사건 결정문 및 법조문 해석상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실을 통보하면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관계 규정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법상·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와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말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그런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위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1차적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갖는지 여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16조 제1항),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제17조 제1, 2항),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1조 제1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비로소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개시되게 된다.

2)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7조, 제9조, 제14조, 제23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0조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신고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며, 그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은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명확히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16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제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5항,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4항,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제4항,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5항,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52조 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제4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 제6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4항, 소방기본법 제56조 제3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등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3)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권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개별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개별 행정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행정청’의 일반적인 정의 규정만 있을 뿐이다),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① 어떤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는지 특정할 수 없을뿐더러, ②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

나)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등 과태료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과태료 제도에 대한 단일법으로 제정되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는 개별 행정청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한 경우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개별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는 개별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개별 행정청이 개별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다는 전제에 선 규정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5조를 근거로 행정청이 1차적인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소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청탁 금지법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행정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B군수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위반사실 통보만 한 경우에도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판단

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

가) 위반자는 2018년 B군청 자치행정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며 2018년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D는 위반자의 아들로 '2018년 제4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으로 근무하였다.

2) 구체적 위반행위

가) B군수는 2018. 4. 10. '2018년 제3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을 공고하였고, D는 2018. 4. 17.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무기계약직)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위반자는 2018. 4. 17. 면접위원으로 C가 위촉된 것을 확인하고, 면접 당일인 2018. 4. 18. 14:00경 C에게 '과장님 오늘 면접자 중 CCTV 관제센터 D(아들이) 있어요. 잘 좀 봐주세요. 행정계장 자리라 더 조심스럽고 과장님께도 부담 드리는 것 같아 말씀 못 드리겠고 믿을 사람도 없어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 걱정되어 과장님께 부탁드려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나) B군수는 2018. 5. 2. '2018년 제4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을 공고하였고, D는 2018. 5. 11.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무기계약직)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위반자는 2018. 5. 14. 12:09경 B군청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며 무기계약직 등 채용 업무를 총괄하던 E에게 '과장님 어려운 부탁 드리려구요.

오늘 CCTV 관제센터에 큰애(D)가 응시했습니다. 두 번 떨어졌는데 꼭 일해보고 싶어 해요. 적성에도 맞고 인터넷방송 모니터링 관련 일도 해 봐서 의욕은 넘치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저도 다른 좋은 자리 많이 봤어도 욕심이 없었는데, CCTV일은 우리 애가 적성에 맞고 자격증도 따고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채용되면 아주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서 말리지 않았어요. 지난 두 번 시험에는 아무에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D) 잘 좀 살펴봐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다) 위반자는 2018. 5. 11. ‘2018년 제4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의 면접위원으로 B군청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근무하던 F가 위촉된 것을 확인하고, 2018. 5. 14. 10:40경 F에게 ‘실장님 어려운 부탁 드리려구요. 오늘 CCTV 관제센터에 큰애(D)가 응시했습니다. 두 번 떨어졌는데 꼭 일해보고 싶어해요. 적성에도 맞고 인터넷방송 모니터링 관련 일도 해 봐서 의욕은 넘치는데 자꾸 떨어지네요. 첫 번째 떨어져서는 자격증이 없어서 그랬나보다고 자격증도 바로 땀터라구요. 저도 다른 좋은 자리 많이 봤어도 욕심이 없었는데, CCTV 일은 우리 애가 적성에 맞고 자격증도 따고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채용되면 아주 열심히 잘 할 것 같아서 말리지 않았어요. 지난 두 번 시험에는 아무에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D) 잘 좀 살펴봐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라) F은 2018. 5. 14. 11:54경 ‘네’라고 답변한 뒤 14:00 열린 면접시험에서 D 등 4명의 응시자를 상대로 면접 평가를 하면서, D에 대하여 다른 응시자에 비하여 높은 평가(5개 평가항목 중 4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상’, 1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중’을 부여)를 하였고, 그 결과 D가 최종 합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반자는 2018년 제3, 4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과 관련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C, E, F에게 아들인 D의 합격을 청탁하였으므로, 위반자의 각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

과태료의 금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반자는 청탁 당시 아들 D가 응시한 ‘2018년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시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하였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촉된 면접위원 명단을

확인한 후 아들 D가 합격 할 때까지 3회에 걸쳐 D를 합격시켜 줄 것을 청탁하였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위반자의 행위는 최근 취업 과정의 공정을 요구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다. 더욱이 위반자의 청탁에 따라 D는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D를 제외한 나머지 응시자들의 취업 기회가 실제로 박탈되었다.

다만 ① 위반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② C는 위반자가 2018. 4. 18. 보낸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뒤늦게 확인하여 위반자의 청탁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D가 '2018년 제3회 B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험'에 불합격한 점, ③ E는 D가 응시한 시험의 면접위원이 아니어서 D의 합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반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외에 기록과 심문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12,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1. 3.

과태료
부과

징계부가금 의결 시 과태료 부과 여부

울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항 전단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0. 26.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후 과태료 부과 여부

대구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194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주 문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21. 11. 26.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의 위반자들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이 법원에 접수되었는데, 2023. 3. 13.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위반자들에 대하여 위 과태료 위반사실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로 각 기소하여 이 법원 2023고단 787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법률 제23조 제5항 단서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별도로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31.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후 과태료 부과 여부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1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서 2017년 설 또는 추석 무렵 직무 관련자인 하도급업체 대표이사 B로부터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5만 원 상당의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반자가 위와 같은 금품 수수 사실이 포함된 공소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269 사건에서 뇌물수수죄로 형사 처벌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1. 29.

과태료
부과

기소유예시 과태료 부과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124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위반사실의 인정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중소기업은행 B지점 기업고객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나목의 공직자 등에 해당함에도, 직무관련이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의 직원 D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받은 후, 위 B지점의 여신거래업체인 (주)E의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모두 위 법무사 C 사무소에서 진행하도록 한 사실, 위반자는 위와 같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처분(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고 받은 금품이 소액이며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과태료 부과액의 결정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반자가 이미 은행에서 상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점, 금품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D로부터 받은 금품 중 상당부분을 회식비, 청원경찰 식사보조비 등의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수수받은 금품의 2배에 해당하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제23조 제5항 제1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27.

과태료
부과

기소유예시 과태료 부과 여부

광주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19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의 부과 요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5항 제3호는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반자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위반자의 행위는 형법상 뇌물공여죄 또는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B공사의 시공사 소속의 공무부장으로서 2018. 2. 2.경 공사감독관 C에게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되므로, 위반자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결국 1회에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은 과태료를 받는데 반해, 위반자는 아무런 실질적 제재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검사가 위반자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 1. 29.

과태료
부과

위반자 주소지 미기재시 처리

의정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2과9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이 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7항은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는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의견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행정청은 위반자의 주소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채 통보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22. 3. 30. 이에 관한 보정명령(통보보완요구)을 하였음에도 행정청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반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관할을 특정할 수 없고, 위반사실을 인정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통보가 부적법하므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재판을 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재판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5.

양벌규정

적용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5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행정청은 'B'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위반자가 2020년 및 2021년 C 연간보고서 제작 용역업체 대표로 2020. 4. 6. 및 2021. 4. 7.에 C 연간보고서 제작 완료 후 납품하면서 커피 기프트콘 카드(10,000원)를 별첨하여 2020년 및 2021년 총 2회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금품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였다는 위반사실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B'를 위반자로 하여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위반자가 운영하는 'B'는 상법상 회사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니고 위반자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이다.

다. 위반자에 대하여는 같은 위반사실로 과태료 부과 결정(2021. 6. 24.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과13 결정)이 고지되었다.

2. 판단

가. 행정청은 'B'가 주식회사임을 전제로 위반자를 '주식회사 B'로 하여 위반사실을 통보 하였으나, 'B'는 상법상 회사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니므로 행정청이 통보한 위반자는 'B'를 운영하는 위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탁금지법 제2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개인 사업자인 위반자 자신이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이상 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7. 23.

양벌규정

적용대상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결정

사 건 2020과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B 단체

주 문 1. 위반자 A를 과태료 600,000원에 처한다.
2. 위반자 B단체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위반자 A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가 2019. 3월경 공공기관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 제4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등인 C에게 조의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위반자 B단체

이 사건 통보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위반자 B단체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D센터에 학교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산지생산자들의 임의 친목단체라서 단체의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연락처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구성원 역시 개인이 아니라 E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F주식회사 등 15개 업체(2020년 기준, 개중에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섞여 있다)로 이루어져있다. 회장은 매년마다 위 각 업체들의 대표가 돌아가면서 맡는 것으로 보이고, 2019년 당시 G조합의 대표자인 위반자 A가 회장을 맡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양벌규정의 취지는 실제 위반행위자 외에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사업주도 처벌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취지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반자 B단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적 친목단체에 불과하고, 특별히 조직화된 실체를 갖춘 채로 영업 내지 업무활동을 하는 단체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 및 위반사실의 정도, A가 당시 위반자 B단체의 회장을 맡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자 B단체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14.

양벌규정

사비 지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9과5425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주식회사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1,4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한국전력공사의 B 시설위탁관리용역을 맡은 회사인 사실, 위반자의 사용인으로 한전 C팀 관리소장(현장대리인)인 D는 2019. 1. 11. 한전 E부 직원 F에게 30만 원, G에게 20만 원 상당의 각 상품권을, 2019. 2. 1. 한전 같은 부서 직원 H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각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반자의 사용인이 공직자 등(한전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을 위배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위반자는, ① 위와 같은 상품권 교부는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직원들에게 준 것이므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② 위 상품권은 위반자 C팀 직원들끼리 매월 5천 원 내지 1만 원을 각출하여 조성한 상호회비 성격의 돈으로 구입한 것인데, 위반자는 위 C팀 직원들의 회비가 있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고,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통장으로 지급되는 비용 외에는 현금 사용을 엄격히 관리, 금지하는 등 직원들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 감독의무를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반자의 관리 감독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①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반자는 한전의 B 시설위탁관리 용역사이고, 위 상품권을 교부받은 F, G, H는 한전 E부 직원들로서 위반자의 위 용역 업무의 담당자들이므로, 비록 위 직원들이 전출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대가성은 필요하지 않다) D는 직무와 관련하여 위 한전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고, ②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C팀 직원들은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매월 5천 원 내지 1만 원씩의 회비를 내고 경조사비를 모아왔고, 그 경조사비로 위 한전 직원들에게 교부한 상품권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비용 지출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관리 감독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거나,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반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과태료 금액

다만 위 한전 직원들이 당시 전출 예정인 자들로 위반행위로 인한 대가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위반자의 C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아온 경조사비에서 직원들 동의하에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금품의 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

4. 결론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4조, 제23조 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9.

양벌규정

적용

부산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1과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주식회사 B

주 문 위반자들에게 각 과태료 1,000,000원씩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소방피복 제작·납품업체인 위반자 주식회사 B(이하 ‘위반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반자 A이 2021. 6. 23. 11:50경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6명과 함께 식사하고 식사대금 합계 45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제공행위에 있어서 위반자들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위반자 회사가 위반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양벌규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위반자 회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4조에 따라 위반자들에게 각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28.

양벌규정

적용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20과5148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2. 주식회사 B

주 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1,050,000원을, 위반자 주식회사 B에게 과태료 1,05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 A는, 위반자 주식회사 B가 대구 C에서 신축중인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다.

나. 위반자 A는 2018. 5. 12. 경산시 E 소재 F에서, D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민원과 인·허가 및 사용검사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G구청 건축과의 건축과장인 H, H가 데리고 나온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같은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I와 골프를 치면서 H, I의 골프장 이용료 42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위반자 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인 H, I에게 제공하였고, 위반자 주식회사 B는 그 직원인 위반자 A가 위반자 주식회사 B의 업무인 아파트신축공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품등을 제공하였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자 주식회사 B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보더라도 위반자 주식회사 B가 실시한 교육만으로는 아파트신축공사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24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10.

양벌규정

적용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결정

사 건 2019과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주식회사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주 문

1. 위반자 주식회사 A, B에게 각 과태료 2,400,000원을 부과한다.
2. 위반자 C, D, E, F, G, H, I, J에게 각 과태료 100,000원을 부과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B는 위반자 주식회사 A의 부회장으로서 2018. 9. 13.부터 2018. 9. 15.까지 사이에 K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2018. 9. 10. ~ 2018. 9. 18.) 중 주식회사 A에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시정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K시의회 의원 21명 및 K시청 교통행정과 공무원 3명 등 24명에게 시가 49,275원 상당의 금품인 홍삼 선물세트를 각 제공하였고, 위반자 C, D, E, F, G, H, I, J는 K시의회 의원들로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위반자 주식회사 A의 부회장인 위반자 B로부터 시가 49,275원 상당의 금품인 홍삼 선물세트를 각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3조 제5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19.

양벌규정

면책 조건

인천지방법원 결정

사 건 2017과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A

주 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로부터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현장 대리인 ○○○가 2016. 10. 11.경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 ○○○감리업체 감리단장인 ○○○과 식사 등을 하면서 비용 479,164원을 부담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반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 8. 25.경 법무법인의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변호사를 초빙하여 위 ○○○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부정청탁금지법의 내용 및 준수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점, ② 2016. 9.경 위반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금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위반자에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해설집을 배포한 점, ③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개별 공사현장에도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인에게 문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위 ○○○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반자를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2. 8.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
2023**



국민권익위원회